www.sdm.go.kr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2022

옴부즈만

운영보고서

이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 활동실적을 서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같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보에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11년 출범한 서대문구 옴부즈만은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올해로 13년째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합의한 운영성과를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2022년도 서대문구 옴부즈만의 활동은 우선, 구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구민과 행정청 간 갈등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에 제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고충민원 조사를 하였습니다. 위법·부당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다 나은 처리가 없을지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대문구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수의계약과 같은 공공사업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으로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사업의 발주단계부터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그에 따른 결과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감시평가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계약이 이행되었는지, 불필요한 공공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시행된 사업으로 인해 성과가 있었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고 감시하였습니다.

날로 민원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이해관계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제3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는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 옴부즈만은 구민의 요구 및 불편사항에 대한 해법을 찾고 구정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향해 함께 가는 것에 힘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옴부즈만 일동

목 차

제1부 옴부즈만 운영개요

제1장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9

제2장 제6기 옴부즈만 소개 ····· 11

제3장 업무처리 절차 등 ····· 12

제2부 옴부즈만 운영성과

제1장 고충민원 처리 ····· 19

1. 고충민원 처리 결과
2. 2022년 고충민원 처리 현황

제2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 27

1.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처리 결과
2. 2022년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현황

제3부 고충민원 조사처리

제1장 도시교통분야 ····· 33

1. 노점정비 관련 억울함 호소

제2장 복지행정분야 ····· 42

1. 국공립어린이집 근로교사 민원

제4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제1장 공사 ····· 47

1. 홍은도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2.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장기계속계약)(1차)
3. 2022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4. 안산 휴식공간 조성 및 산책로 정비공사
5. 생태경관 보행구역 조성사업
6. 백련근린공원(서대문) 조성(홍은동 산11-314)
7. 백련근린공원(서대문) 조성(홍은동 산26-133일대)

제2장 용역 ····· 69
1. 서대문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용역
2.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3. 서대문형무소 구치감 부지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4. 서대문역 1번 출구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용역
6.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메타버스 자연사박물관 구축 용역
7. 안산근린공원 1지구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제3장 물품 ····· 94
1. 2021년 CCTV 시스템 통합 구매 설치
2. 2021년 하반기 CCTV 통합 구매 설치
3. 2021년 CCTV 금속기둥 구매
4. 2021년 하반기 CCTV 금속기둥 구매
제4장 수의계약 ····· 98
1. 발해태조건국지·명림답부전 보존처리 용역
2. 기부자 명예의 전당 건축공사
3. 지능형 선별관제 및 지역특성 분석플랫폼 구축
4. 고은산 진입로 개설공사
5.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6. 북한산근린공원 9지구 조성공사

제1부 옴부즈만 운영개요

제1장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9

제2장 제6기 옴부즈만 소개 • 11

제3장 업무처리 절차 등 • 12

제1장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 도입배경

서대문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2.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추진경과

- 2011. 04. 27.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1. 05. 11. 시민감사옴부즈만(5인) 공개모집 및 선정
- 2011. 05. 30. 제1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 2011. 06. 01.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제1차 정례회의 개최)
- 2011. 06. 15.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
- 2012. 03. 17. 시민감사옴부즈만 인터넷 민원접수 개시
- 2012. 03. 20. 2011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 2012. 05. 29.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 옴부즈만 운영사례 발표
- 2013. 02. 27. 제5회 국민신문고 대상 옴부즈만 분야 수상
- 2013. 03. 26. 「2012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3. 05. 29. 제2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4, 신규1)
- 2013. 11. 19. 「시민감사옴부즈만 토론회」 개최
- 2014. 03. 19. 「2013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5. 03. 26. 「2014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5. 05. 27. 제3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3, 신규1)
- 2016. 04. 28. 「2015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6. 05. 01. 제3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1)
- 2017. 03. 29. 「2016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7. 06. 01. 제4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1, 신규2)
- 2017. 11. 30.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워크숍」지방옴부즈만 발전방안 발표
- 2018. 03. 27. 「2017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개최
- 2018. 07. 01. 제4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신규2)
- 2018. 10. 11. 「지방옴부즈만 워크숍」서대문구 운영현황 및 사례발표
- 2019. 02. 27. 제7회 국민권익의 날 옴부즈만 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 2019. 03. 13. 「2018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개최
- 2019. 06. 01. 제5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신규2)
- 2019. 12. 17. 「서울시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서대문구 사례발표
- 2020. 02. 24. 제5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신규1)
- 2020. 04. 27. 「2019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개최
- 2020. 07. 01. 제5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1)
- 2021. 05. 11. 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21. 06. 01. 제6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3)
- 2022. 02. 23. 제6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1)
- 2022. 04.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2. 05. 17. 「2021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개최

제2장 제6기 옴부즈만 소개

이주한 대표옴부즈만

● **주요경력**

변호사
現) 법무법인 위민
現)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원

류정수 옴부즈만

● **주요경력**

공학박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前)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前) ㈜브니엘컨설턴트 대표이사

김현국 옴부즈만

● **주요경력**

前) 감사원 감사관
・ 지방행정감사국 제4과장(부이사관) 등 역임
前) IBK신용정부(주) 준법관리인
現)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자문위원

박상권 옴부즈만

● **주요경력**

공학박사, 토목시공 기술사
前) 서울시・서초구 재난치수과장
現) ㈜범한엔지니어링 부사장

제3장 업무처리 절차 등

1. 옴부즈만 자격, 임기, 직무 및 권한

1-1 옴부즈만의 자격

-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1-2 옴부즈만의 임기 및 구성

-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음

지 위	위촉방법	인원(임기)	신 분	주요기능
구청장소속 업무독립 수행	구의회 동의 후 구청장 위촉	5명 이내 (4년)	비 상 임 민간위촉	고충민원 조사 및 청렴계약 감시・평가

1-3 옴부즈만의 직무

-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부의한 사건의 조사·처리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평가

1-4 옴부즈만의 권한

(1) 시정요구 등의 조치요구 권한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구청장은 특별히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함.

(2) 조사결과 공표 권한

옴부즈만은 고충 민원 조사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조사결과와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

옴부즈만의 조치의견 유형

· 시정요구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 이를 취소, 변경, 개선하거나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 감사요구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행위
· 권고 및 의견 표명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정책 및 제도, 현 실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합리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2. 옴부즈만 업무처리 절차

2-1 고충민원 조사처리

(1) 민원인이 방문, 서면, 청렴포털(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접수 후 다가오는 옴부즈만 정례회의(주1회)를 거쳐 조사 여부를 결정

(2) 정례회의에서 조사가 결정되면 조사 착수 후 3일 이내 민원인에게 조사가 착수되었음을 통지하고 관계부서에도 조사 실시 통보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3) 조사는 1개월 이내 종료하여야 하며 처리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 시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민원인에게 통지

(4) 조사가 완료되면 정례회의에서 조사내용 검토 및 조치의견을 결정 후 민원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관계부서에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 등 조치의견을 통보

(5) 옴부즈만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부서는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지

2-2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1) 관련 부서장은 매년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옴부즈만에 제출

(2) 옴부즈만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감시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활동 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 수립

(3)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감시·평가 대상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후, 대상별 계약 이행실태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 감시평가 시행

(4) 감시평가 대상 사업기간 또는 용역 및 구매 기간이 종료되는 매년 말 감시평가 활동결과 검토 및 관계부서에 대한 조치의견을 정례회의에서 결정 후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 등 조치의견을 통보

(5) 옴부즈만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부서는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지

〖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 〗

- 총공사비 3억 원 이상의 공사
- 5천만 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 그 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2-3 활동실적 보고 및 공표

(1) 대표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옴부즈만 활동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

(2)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아래의 사항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구보에 공표

[옴부즈만 공표사항]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 옴부즈만의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 옴부즈만의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불수용 현황

제2부 옴부즈만 운영성과

제1장 고충민원 처리 • 19

제2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 27

제1장 고충민원 처리

1. 고충민원처리 결과

1-1 민원처리 결과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건수	직접조사								이첩 등 처리				
		계	조치의견							계	이첩	단순 안내	각하	취하
			감사 요구	시정 요구	권고	의견 표명	조정	불인용	진행 중					
2011년 (6~12월)	5	3	1	1	-	1	-	-	-	2	-	-	1	1
2012년	72	30	1	2	13	1	1	12	-	42	36	5	1	-
2013년	126	28	-	-	13	5	5	5	-	98	83	10	1	4
2014년	97	20	-	-	9	3	4	4	-	77	65	7	3	2
2015년	65	18	-	1	7	3	1	6	-	47	28	10	5	4
2016년	44	22	-	-	11	7	3	1	-	22	14	2	4	2
2017년	58	25	-	-	16	7	1	1	-	33	28	3	1	1
2018년	51	24	-	-	18	4	1	1	-	27	18	5	-	4
2019년	35	13	1	-	4	4	2	2	-	22	15	2	-	5
2020년	57	8	1	-	2	4	-	2	-	49	44	-	1	4
2021년	36	8	-	-	5	3	-	-	-	28	22	2	1	3
2022년	21	2	-	-	1	2	-	-	-	19	16	3	-	-
계	667	201	4	4	99	44	18	34	0	466	369	49	18	30

☞ 직접조사 건수 계(2)와 조치의견별 합계(3)가 다른 것은 한 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조치의견 유형이 여러 개인 경우이다. (예: 권고 및 의견표명)

2022년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21건으로 2021년에 비해 15건이 감소하였고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하여 처리한 민원은 2건, 이첩민원은 19건으로 주로 구청 해당부서로의 이첩사항이다.

옴부즈만에서 직접 조사한 민원(2건)은 각각 도시교통, 복지행정 분야의

민원이며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요청의 건, 그리고 구청의 처분에 대해 옴부즈만에게 확인을 요구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다. 옴부즈만 조사는 현장 확인과 민원인 및 관련 직원 면담, 관계 서류 및 법령 검토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의견의 유형이 권고, 의견표명, 감사요구 등으로 분류되어 서대문구청에 조치를 통보하게 된다.

1-2 민원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건수	민원 분야													
		건축 주택	도시 계획	재개발 재건축	도시 교통	환경 청소	공원 녹지	복지 행정	일반 행정	재무 행정	도로 관리	하수 관리	노점 영업	보건 위생	문화 체육
2011년 (6~12월)	5	4	1	-	-	-	-	-	-	-	-	-	-	-	-
2012년	72	8	-	7	13	7	1	1	10	4	6	2	7	5	1
2013년	126	10	-	18	28	16	9	-	12	7	9	3	11	3	-
2014년	97	11	1	13	22	25	3	1	8	-	13	-	-	-	-
2015년	65	16	4	11	9	13	2	-	7	-	3	-	-	-	-
2016년	44	14	1	5	4	1	4	-	14	-	1	-	-	-	-
2017년	58	20	1	4	13	5	2	-	3	-	5	1	2	1	1
2018년	51	22	-	8	1	3	5	3	2	-	2	2	1	2	-
2019년	35	14	-	4	4	3	1	1	8	-	-	-	-	-	-
2020년	57	23	-	1	3	1	7	3	7	2	4	1	-	5	-
2021년	36	5	-	7	4	5	4	-	7	-	-	2	-	2	-
2022년	21	7	-	1	4	1	-	2	1	-	-	1	1	1	2
계	667	154	8	79	105	80	38	11	79	13	43	12	22	19	4

분야별 민원 접수현황을 볼 때 2022년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민원 전체 21건 중 건축주택 분야(7건)가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며 그 내용으로는 건물

신축 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신고 혹은 불법건축물 및 불법용도변경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민원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도시교통 분야(4건) 민원으로는 불법주정차 신고 또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항의, 그 외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충 요청 등이 있었다.

1-3 옴부즈만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현황

(단위 : 건, %)

구분	조치의견	조 치 결 과					수용률
		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진행 중	
2011년 (6~12월)	3	3	2	1	-	-	100%
2012년	17	17	17	-	-	-	100%
2013년	18	18	18	-	-	-	100%
2014년	12	12	8	4	-	-	89%
2015년	11	11	11	-	-	-	100%
2016년	18	18	18	-	-	-	100%
2017년	23	23	21	2	-	-	95.6%
2018년	22	22	18	4	-	-	90.9%
2019년	9	9	6	2	1	-	81.4%
2020년	5	5	4	1	-	-	93.3%
2021년	8	8	7	-	-	1	87.5%
2022년	2	2	2	-	-	-	100%

* 수용률(%) 계산 시 수용은 1, 불수용은 0, 일부수용은 1×(수용건수/조치의견건수)를 적용하였다.

옴부즈만의 조치의견에 대한 구청의 조치결과가 일부수용인 건은 조치의견에 대해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유로 한 건의 민원 조사결과에 따른 옴부즈만의 여러 건의 조치의견 중 일부만 조치이행이 있어 완전 수용되지 않은 사항이다.

2. 2022년 고충민원 처리 현황

2-1 고충민원 창구별 접수건수 및 처리기간

총계	창구별 접수 건수			처리 기간(일)		
	청렴포털(인터넷)	방문	구청장 부의	평균	최대	최소
21	21	0	0	25	37	13

※ 처리기간 계산은 옴부즈만 직접조사 민원에 한함.

2-2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접수 건수	직 접 조 사								기타				
	계	조치의견							계	이첩	단순 안내	각하	취하
		감사 요구	시정 요구	권고	의견 표명	조정	불인용	진행 중					
21	2	-	-	1	2	-	-	-	19	16	3	-	-

☞ 직접조사 건수 계(2)와 조치의견별 합계(3)가 다른 것은 한 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조치의견 유형이 여러 개인 경우이다. (예: 권고 및 의견표명)

<민원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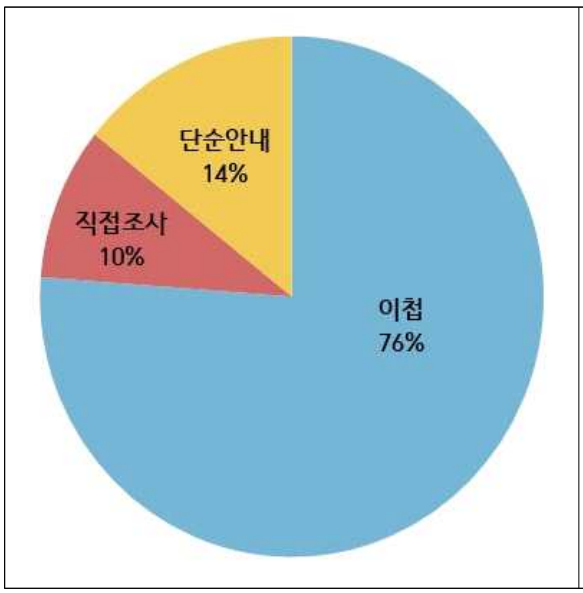

<직접조사 (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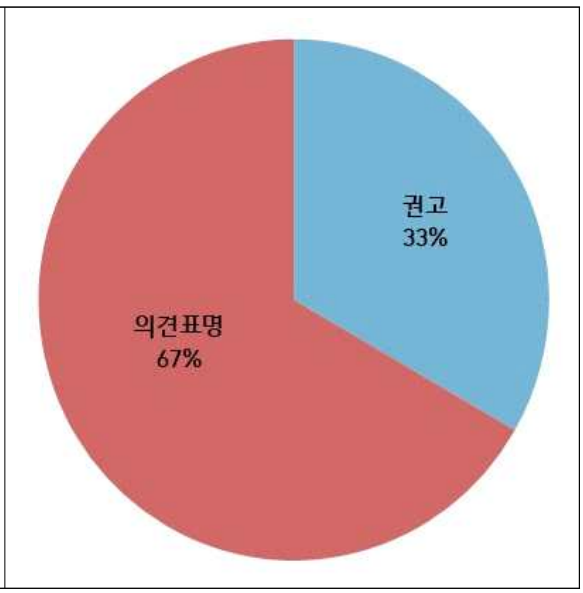

2-3 고충민원 분야별 현황

접수 건수	고충 민원 분야													
	건축 주택	도시 계획	재개발 재건축	도시 교통	환경 청소	공원 녹지	복지 행정	일반 행정	재무 행정	도로 관리	하수 관리	노점 영업	보건 위생	문화 체육
21	7	-	1	4	1	-	2	1	-	-	1	1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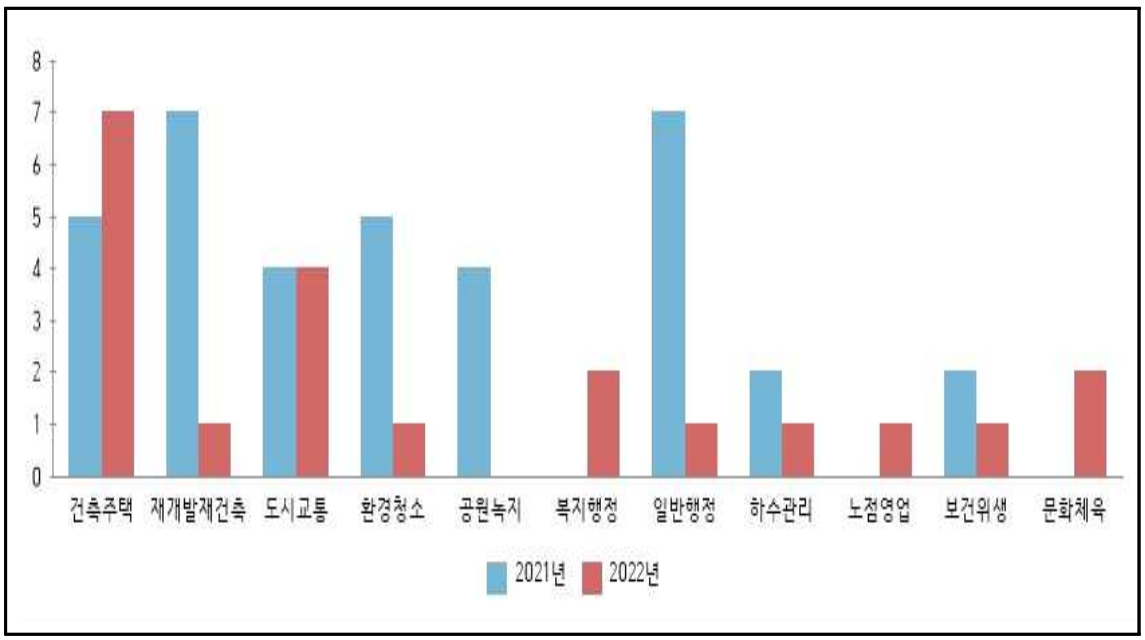

2-4 조치의견에 대한 부서 조치결과 현황

계				권고				의견표명			
계	수용	일부 수용	불 수용	계	수용	일부수용	불 수용	계	수용	일부수용	불 수용
2	2	-	-	1	1	-	-	2	2	-	-

☞ 직접조사 건수 계(2)와 조치의견별 합계(3)가 다른 것은 한 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조치의견 유형이 여러 개인 경우이다. (예: 권고 및 의견표명)

2-5 고충민원 조사처리 현황

연번	민원요지	옴부즈만 의견 요약	구청 수용여부
1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연차시기변경 요구, 아동관찰일지 작성 종용 등 문제제기, 시정 요청	**<권고>** 어린이집 방문 및 교직원 연차사용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연차는 민원인 주장에 일리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시기변경권이 있으므로 상호 조정하여 원만하게 해결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민원인이 담당한 반의 관찰일지를 확인한 결과 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구청의 국공립어린이집 담당부서는 이와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수용**
2	노점정비 관련 억울함 호소 노점판매를 허락한 구간이 아닌지 확인 요청, 단속하여 가져간 물품을 반환받는 법 문의, 단속과정에서 신체적 피해 등 보상 요청	**<권고 및 의견표명>** 이 사건 도로 등에 특정 표시를 그려서 한시적으로 노점상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행정청이 신뢰를 부여한 경우인 바, 해당 표시를 하였음에도 이후 언제든지 단속할 수 있다는 등의 의미를 분명히 고지한 후 도로에 해당 표시를 할 것. 단속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이 누락되지 않게 할 것이며 과도한 신체 접촉 등은 자제할 것. 수거 적치물에 대해서는 보관장소를 알리고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 반환 절차 등 진행할 것.	**수용**

2-6 기타 민원 처리 현황 (이첩, 취하, 각하, 단순안내)

❶ 이첩

연번	민원요지	처리 사항	담당부서(기관)
1	어린이집 근처 흡연자들 조치 요청	이첩	지역건강과
2	연희동 주택 용도변경으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	이첩	건축과
3	신축 건축물 공사 불편사항과 높이 제한 요청	이첩	건축과
4	△△아파트 보행자전용도로 착공 요청	이첩	도시재정비과
5,6	홍제동 건축공사 불만 제기(높이, 이격거리 등)	이첩	건축과
7	신촌 물총축제 취소에 대한 항의	이첩	문화체육과
8	신축 아파트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충 요청	이첩	교통행정과
9	○○아파트 예비비적립금 사용의 건 (부적정 여부 확인 및 조치 요청)	이첩	주택과
10	하수구 방역요청	이첩	지역건강과 안전치수과
11	신촌 물총축제 취소 관련 문의	이첩	문화체육과
12	공휴일 카카오톡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이첩	청소행정과
13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과 단속 요청	이첩	주택과
14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이첩	교통관리과
15	우리동네키움센터 공사관련 인근 영업자 피해 호소	이첩	아동청소년과
16	주택가 주차임에도 반복적인 불법주차신고로 인한 생활불편 호소	이첩	교통관리과

❷ 단순안내

연번	민원요지	안내사항
1	구청장 취임식 불만 제기	행정지원과로 이첩 결정하였으나 다른 민원 창구로 동일인이 동일 내용 접수하였고 해당 부서에서 답변 완료하였기에 부서의 기회신 내용을 참고할 것을 단순 안내
2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및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확인 요청	전화로 회신받기를 원하여 민원내용 파악 후 해당부서(주택과, 건축과)에서 전화로 설명하도록 조치 후 종결
3	드라마촬영으로 인한 촬영차량 불법주정차, 소음 등 인근 주민 피해	도시관리공단(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이첩 결정하였으나 다른 민원 창구로 동일인이 동일 내용 접수하였고 해당 부서에서 답변 완료하였기에 부서의 기회신 내용을 참고할 것을 단순 안내

제2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1.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처리 결과

1-1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결과 현황

(단위 : 건)

구분	감시 평가 대상					감시 평가 결과					
	계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계	감사 요구	시정 요구	권고	의견 표명	특이사항 없음
2011년 (6~12월)	30	11	14	5	-	31	1	2	-	19	9
2012년	22	15	5	1	1	22	-	-	1	12	9
2013년	25	6	11	2	6	25	-	-	6	12	7
2014년	22	8	9	3	2	22	-	-	-	14	8
2015년	17	8	2	3	4	17	1	-	8	6	2
2016년	20	10	4	-	6	20	-	2	10	5	3
2017년	18	10	5	3	(7)	20	1	-	10	6	3
2018년	20	7	2	1	10	22	1	-	9	7	5
2019년	20	6	2	1	11	25	6	-	10	3	6
2020년	24	4	8	2	10	27	2	-	11	3	11
2021년	30	8	8	-	14	36	4	-	11	15	6
2022년	24	7	7	4	6	23	1	-	6	9	7
계	272	100	77	25	77	290	17	4	82	111	76

☞ 2022년 감시평가 대상 분류는 3억 원 이상 공사, 5천만 원 이상 용역·물품,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분류하였고, 감시평가 대상 건수와 결과 건수가 다른 것은 한 건의 사업평가에 대해 조치의견 유형이 여러 개인 경우(예: 권고 및 의견표명), 혹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2022년 청렴계약 감시평가는 3억 원 이상 공사 7건, 5천만 원 이상 용역 7건, 5천만 원 이상 물품 4건,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6건으로 총24건을 실시하였다.

서대문구청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계약 과정 즉, 입찰, 계약체결, 이행 및 결과 등 전반에 거쳐 감시평가 활동을 하였다. 사업 발주의 적정성

을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와 적정한 자격제한에 따른 입찰여부, 업체의 성실한 계약 이행여부, 사업 과정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 준공 후의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시·평가하였다.

1-2 옴부즈만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현황

(단위 : 건, %)

구분	조치의견	조 치 결 과					수용률
		계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진행 중	
2011년	22	22	20	2	-	-	100%
2012년	13	13	12	1	-	-	100%
2013년	18	18	17	1	-	-	97%
2014년	14	14	12	2	-	-	93%
2015년	15	15	13	1	1	-	90%
2016년	17	17	15	2	-	-	94%
2017년	17	17	15	2	-	-	94%
2018년	17	17	14	3	-	-	91%
2019년	19	19	15	4	-	-	90%
2020년	16	16	16	-	-	-	100%
2021년	30	30	30	-	-	-	100%
2022년	23	23	-	-	-	23	-

* 2013년도부터 수용률(%) 계산 시 수용은 1, 불수용은 0, 일부수용은 1×(해당 청렴계약 건의 수용건수/조치의견건수)를 적용하였다.

2. 2022년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현황

연번	분야	사업명	부서명	옴부즈만 조치의견
1	공사	홍은도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민관협치과	권고 및 의견표명
2	공사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장기계속계약)(1차)	토목과	권고
3	공사	2022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토목과	의견표명
4	공사	안산 휴식공간 조성 및 산책로 정비공사	푸른도시과	의견표명
5	공사	생태경관 보행구역 조성사업	푸른도시과	의견표명
6	공사	백련근린공원(서대문)조성(홍은동 산11-314)	푸른도시과	조치의견 없음
7	공사	백련근린공원(서대문)조성(홍은동 산26-133일대)	푸른도시과	권고 및 감사요구
8	용역	서대문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용역	도시계획과	조치의견 없음
9	용역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도시재정비과	조치의견 없음
10	용역	서대문형무소 구치감 부지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문화체육과	의견표명
11	용역	서대문역 1번 출구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안전치수과	조치의견 없음
12	용역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용역	자연사박물관	조치의견 없음
13	용역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메타버스 지연사박물관 구축 용역	자연사박물관	의견표명

연번	분야	사업명	부서명	옴부즈만 조치의견
14	용역	안산근린공원 1지구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푸른도시과	권고
15	물품	2021년 CCTV 시스템 통합 구매 설치	스마트정보과	조치의견 없음
16	물품	2021년 하반기 CCTV 통합 구매 설치		
17	물품	2021년 CCTV 금속기둥 구매		
18	물품	2021년 하반기 CCTV 금속기둥 구매		
19	수의	발해태조건국지·명림답부전 보존처리 용역	문화체육과	의견표명
20	수의	기부자 명예의 전당 건축공사	복지정책과	의견표명
21	수의	지능형 선별관제 및 지역특성 분석플랫폼 구축	스마트정보과	조치의견 없음
22	수의	고은산 진입로 개설공사	푸른도시과	권고
23	수의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푸른도시과	의견표명
24	수의	북한산근린공원 9지구 조성공사	푸른도시과	권고

제3부 고충민원조사처리

제1장 도시교통분야 • 33

1. 노점정비 관련 억울함 호소

제2장 복지행정분야 • 42

1. 국공립어린이집 근로교사 민원

노점정비 단속 관련 억울함 호소

[1] 민원개요

가. 민원신청 : 2022. 4. 27.

나. 민원내용

민원인의 모친은 ‘서대문구 홍제역 부근 **로 ○○’(이하 ‘이 사건 도로’이라 한다)에서 표고버섯 등을 판매하다가 2022. 4. 14. 오후 2시 45분경 구청 건설관리과 단속반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단속 당시 구청 단속반이 판매하는 물건을 발로 차면서 실어 갔는데, 민원인이 단속반의 단속하는 행위를 막으려 하자 단속반 직원 중 한명이 민원인의 팔목을 잡고 비틀어서 민원인을 주저앉게 하였고, 그 결과 허리와 팔목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민원인은 ① 구청이 노점 판매를 허락한 지역에 대하여 예고 없이 단속한 부분, ② 구청이 일관성 없이 자신의 노점만 단속하여 철거하고 단속한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부분, ③ 단속과정에서 자신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요청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조사

가. 현장 확인 및 단속 촬영 영상 확인(2022. 5. 3. 화)

1) 이 사건 도로는 유진상가 앞 사거리(내부순환로 아래에 위치)로 홍제역에서 홍제초등학교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시민들의 유동량이 많은 지역임. 시민들의 원활한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거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점상을 하는 것을 관리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도로 확인 결과 민원인의 모친은 여전히 유진상가 소유의 토지 및 도로에 거쳐 표고버섯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 됨. 다만, 도로에 ‘ㄷ’자 모양의 표시가 있어 이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필

요성이 있어 이를 확인함.

2) 민원인의 노점을 철거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철거를 시작하는 당시부터가 아닌 철거를 진행하는 중간부터 촬영되어 있음(영상 촬영을 담당하였던 차량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처음부터 단속 현장을 촬영할 수 없었음을 설명함). 촬영된 영상에는 민원인이 단속반이 표고버섯 등을 수거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해당 물건이 있는 박스에 앉아 이를 저지하고 있어 단속반 직원과의 다툼으로 민원인이 주저앉은 것으로 보기는 힘듦. 다만, 민원인과 다툼이 있었던 단속반 직원이 민원인의 저항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단속이 완료된 상태에서 구청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을 미는 등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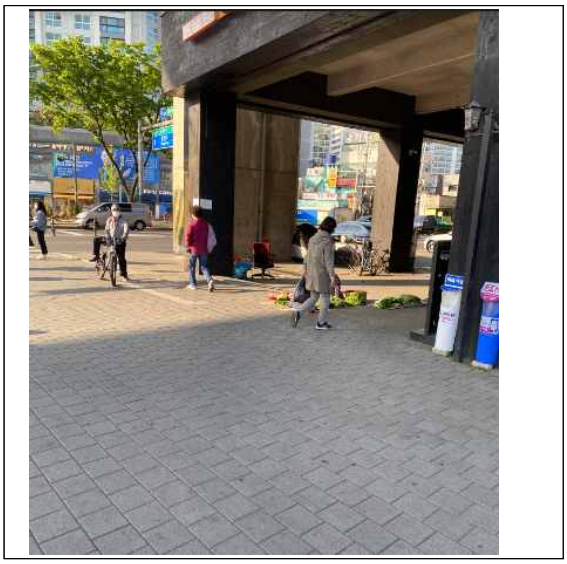

(단속 당시의 상황은 동영상 촬영 누락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2022. 5. 3. 현장 조사 당시에는 유진상가 소유의 토지 및 도로에 거쳐 판매하고 있었음)

나. 담당자 조사(2022. 5. 13. 금)

1) 이 사건 단속을 담당하였던 건설관리과 주무관 및 민원인과 다툼이 있었던 단속반 주사에게 확인한 결과, ① 이 사건 도로는 홍제역 출구 부근이라 보행자 통행이 많고 단속 요청 민원도 상당히 많은 구간이고, ② 이 사건 도로를 단속할 당시 유진상가 사거리 일대는 가로판매대 철거, 노점일제정비 구간이었으며, ③ 단속 및 철거 관련하여 민원인

(2022. 4. 14. 오전) 및 민원인의 가족(2022. 4. 12., 2022. 4. 13.)에게 수차례 정비 통지를 하고 계고장 등을 부착하였음을 설명함(아래 사진), ④ 특히, 2022. 4. 14. 단속 전 구청 담당자는 수차례 유진상가 사거리를 방문하여 유진상가 사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상인들에게 방문하여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하기도 하였는데, 민원인의 모친은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영업을 하지 않다가 단속하는 당일 민원인 등과 함께 이 사건 도로에서 영업을 한 것임. ⑤ 당시 민원인과 다툼이 있었던 단속반 주사 역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소견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함.

(이 사건 단속을 하기 며칠 전부터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도로를 정비할 것을 알리고 계고장 등을 부착하였음)

2) 이 사건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ㄷ’자 모양의 표시 의미는, 도로를 점거하고 영업을 하는 노점상 등을 단속하는 구청 건설관리과 담당이 도로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닌, 노점상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민들의 상황 및 도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절충안으로,

‘ㄷ’자 모양을 넘어서지 않는 지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임을 설명함.

3) 구청 건설관리과 담당은 이 사건 단속을 시작할 당시, 민원인이 구청 공무원의 단속 행위를 방해/저지하여 민원인의 손을 잡는 등 제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이 사건 도로를 단속하는 상황을 촬영할 동영상은 단속 처음부터가 아닌 중간 부분부터 촬영되어 있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음. 해당 동영상을 함께 확인한 결과, 이미 민원인의 저항을 저지하고 단속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구청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을 미는 등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은 해당 부분은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인정함.

다. 관련 법규 확인

1) 도로법 제61조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는 도로에 토석, 입목, 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같은 법 제74조는 도로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도로에 있는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74조 제2항은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적치물 등의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

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거한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1. 24.>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① 도로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적치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적치물 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5조제3항(제7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고, 도로관리청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2)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제4조는 행정대집행의 절차 및 실행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판 단

1) 이 사건 도로는 보행자 통행이 많고 단속 요청 민원도 상당한 지역이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노점상 등을 단속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단속 한 바, 이 사건 도로를 단속하는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2) 신뢰보호의 원칙(信賴保護의 原則)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①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하며, ② 선행조치의 존속이나 정당성에 대한 행정객체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③ 행정객체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고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며, ④ 행정객체가 행한 행동이 행정청의 선행조치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⑤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선행조치에 의하여 형성된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행정청은 노점상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① 이 사건 도로에 'ㄷ' 자 표시를 하고 'ㄷ' 모양을 넘어서지 않는 지역 내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 신뢰를 부여하였고, ② 민원인은 이와 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고 'ㄷ' 모양을 넘어서지 않는 지역 내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였으며, ③ 행정청은 이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단속을 한 것은 사정변경 등이 없는 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 민원인의 모친은 'ㄷ' 모양 안에서만 영업을 한 바, 신뢰를 부여한 행정청이 사정변경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노점상은 비록 도로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로 단속의 대상이지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20~30여 년 전부터 잠정허용구역으로 관리해오고 있어, 개별 지자체별로 노점상을 정비하는 데에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수반되는 특수성이 있고, 특히 특정한 지역에 국한하여 노점상을 정비함에 따른 형평성 결여 등 부작용이 수반되므로 단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이 사건 단속 행위 자체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도로법 제74조 제2항에 따를 때,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바, 이미 민원인의 저항을 저지하고 단속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구청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을 미는 등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점은 부적절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 공무원 역시 민원인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민원인이 과한 저항을 하였기에 이와 같이 대응한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속행위가 정당한 단속행위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이 사건 단속을 촬영한 동영상은 단속 중간부터 촬영되어 민원인의 저항 과정 등에 대한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 직원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마지막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를 때, 구청은 해당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민원인에게 적치물에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조치의견 : 권고 및 의견표명

1) 이 사건 도로 등에 'ㄷ' 자 표시를 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는 한시적으

로 노점상 영업 등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노점상 등에게 행정청이 신뢰를 부여한 경우인 바,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ㄷ’자 표시를 할 것(해당 표시가 어떤 의미인지, 해당 표시를 하였음에도 이후 언제든지 단속할 수 있다는 등의 의미를 분명히 고지한 후 도로에 해당 표시를 할 것). <권고>

2) 단속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이 누락되지 않게 할 것이며, 일부 과한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민원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의견표명>

3) 적치물 등에 대해서는 보관 장소 등을 알리고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추후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 절차를 진행할 것. <권고>

[5] 부서 조치결과

1) 도로상 ‘ㄷ’자 표시 내에서 노점행위할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하였으며 상품이 ‘ㄷ’자 밖으로 나온 경우 계도할 수 있음을 수시하였음

2) 앞으로 단속 동영상 촬영을 철저히 할 것이며 단속 시 민원인과 과한 행동(접촉)은 하지 않도록 현장 단속 직원들에게 교육 실시함.

3) 도로법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적치물 등을 수거 시 ‘도로상무단적치물이동통지서’ 안내문 전달 또는 부착 예정

국공립어린이집 근로 교사의 민원

[1] 민원개요

가. 민원신청 : 2022. 1. 5.

나. 민 원 인 : ***

다. 민원내용

1) 연차시기 변경

2) 아동관찰일지 위조 확인

[2] 조사

가. 현장 조사(2022. 1. 17. 오전 10시경)

1) 위치

☆☆동 ○○○어린이집(***로 ***)의 위치도는 다음과 같다.

〈도면 1〉 위치도

나. 서류 조사

1) 교직원 연차(휴가) 사용 기록부

〈사진1〉 교직원 연차 사용 기록부 (개인정보 등으로 가림 처리)

2) 관찰일지

<사진 2> 관찰일지

<사진 3> 작성 교사 부분, 8월부터 민원인 아닌 타교사 작성,
(개인정보로 가림 처리)

[3] 판 단

가. <사진 1>과 같이 연차(휴가)는 민원인 주장이 타당하나 이는 시기변경권이 있으므로 상호 조정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나. 민원인이 담당한 "◎◎반"의 관찰일지는 <사진 2,3>와 같다. 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서대문구청의 담당과는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5] 부서 조치결과

추후 보육교사 연차 시기조정 등 보육교직원 관리 시 보육교직원과 원장이 상호 협의 하에 정하고, 원장의 부정확한 의사전달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투명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음

제 4 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제1장 공사 • 47

1. 홍은도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2.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장기계속계약)(1차)
3. 2022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4. 안산 휴식공간 조성 및 산책로 정비공사
5. 생태경관 보행구역 조성사업
6. 백련근린공원(서대문) 조성(홍은동 산11-314)
7. 백련근린공원(서대문) 조성(홍은동 산26-133일대)

제2장 용역 • 69

1. 서대문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용역
2.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3. 서대문형무소 구치감 부지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4. 서대문역 1번 출구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용역
6.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메타버스 자연사박물관 구축 용역
7. 안산근린공원 1지구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제3장 물품 • 94

1. 2021년 CCTV 시스템 통합 구매 설치
2. 2021년 하반기 CCTV 통합 구매 설치
3. 2021년 CCTV 금속기둥 구매
4. 2021년 하반기 CCTV 금속기둥 구매

제4장 수의계약 • 98

1. 발해태조건국지·명림답부전 보존처리 용역
2. 기부자 명예의 전당 건축공사
3. 지능형 선별관제 및 지역특성 분석플랫폼 구축
4. 고은산 진입로 개설공사
5.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6. 북한산근린공원 9지구 조성공사

제1장 공사

홍은도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홍은도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 사업기간 : 2021. 11. 22. ~ 2022. 2. 17. ● 사업내용 - 도서관과 홍박공원 간 연결통로 신설 - 홍은도담도서관 내부 리모델링 실시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29 ● 사 업 비 : 354,519,000원 ● 준공일자 : 2022. 2. 17.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460,21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354,519,000원 (낙찰율 : 88.376%) ● 계 약 일 : 2021-11-16 (착수일 : 2021-11-22)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2회 ● 계약금액 증감 : 29,092,910원 ● 준공정산 : △3,806,000원

홍박공원과의 출입구 및 출입통로 조성 홍은도담도서관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도서관 및 공원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본 공사가 진행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시는 (1) 사업의 타당성, (2)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3) 계약내용 변경의 적절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이 사건 공사는 홍은도담도서관 및 홍박공원 연결통로 리모델링 추진계획에 따라 홍박공원과 홍은도담도서관의 연계 공간 조성 및 노후된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나.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1)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는데, 입찰 참가 자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춘 업체로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주계약자 1개사 + 부계약자 1개사)하여야 하는데,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거나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하고, 부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거나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를 득한 심사대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적격심사는 수행능력평가(20점), 구체적으로 시공경험 10점, 경영상태 10점으로 이뤄지고 나머지 80점은 입찰가격으로 결정된다. 주계약자 주식회사 동연건설과 부계약자 △△△△△(주)가 수행능력평가 20점, 입찰가격 75점, 총 95점으로 낙찰되었다.

다. 계약내용 변경의 적절성

1) 이 사건 공사는 2021. 12. 현장여건, 설계누락, 발주처 요청사항 등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총공사비 29,092,910원 증가)과 2022. 2. 15. 건축+기계, 금속 설계변경(정산)(총공사비 3,806,000원 감소), 총 2차례 설계변경을 진행하였다.

2) 1차 설계변경은 총공사비 증가에 대해서는 증가 비율이 이 사건 공사 낙찰금액 대비 10% 미만이고,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건축 감리원 및 기술심사담당관으로부터 검토를 받은바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3) 2차 설계변경 역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1차 설계변경을 포함해서도 그 증가 비율이 이 사건 공사 낙찰금액 대비 10% 미만이고,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건축 감리원 및 기술심사담당관으로부터 검

토를 받은바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순공사비가 설계누락과 발주처요청, 현장여건 변경으로 1,000만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책정된 보험료 1,200만원 가량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순공사비가 감소한 경우이다.

담당부서는 책정된 보험료 등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내역서에 산출된 보험료는 시공사 측에서 가입 및 납부 후 증빙서류(증명서 등) 제출 시 지급 가능하나, 해당 정산 건은(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공사 측의 가입·납부 내역 및 증빙이 없어 정산 시 미지급하였다.' 라고 회신하였다.

3. 종합판단

가. 노후화된 홍은도담도서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홍은도담도서관에서 홍박공원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용역의 진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최초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해당 계약의 낙찰 기준인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발생할 수 없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적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주계약자 주식회사 ○○건설과 부계약자 △△△△△(주)를 선정한 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현장여건, 설계누락, 발주처 요청사항 등을 이유로 2차례 계약 내용을 변경되었다. 1, 2차 설계변경이 모두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되지만, 이 사건 공사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찰 가격이 전체 배점 100점 중 80점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보았을 때, 계약금액의 변경은 보다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이와 같은 설계누락(철거범위 변경, 내역서 누락 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건설일용직근로자의 경우, 2020. 08. 01.부터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되므로,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사의 일용직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시공사 측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및 의견표명

가. 입찰가격이 계약자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용역서, 설계누락(철거범위 변경, 내역서 누락 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권고>

나. 건설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되므로 추후 계약자가 이를 미청구 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바람 <의견표명>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장기계속계약)(1차)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 사업기간 : 2021.12. ~ 2023.06. ● 사업내용 - 지하주차장 조성(120면), 공원리모델링 ● 위 치 : 영천동 263번지 일대 ● 사 업 비 : 17,322,446천원 ● 현 공 정 : 3%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20,213,678,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6,351,682,170원 (낙찰율 : 82.225%) ● 계 약 일 : 2021-12-27 (착수일 : 2021-12-27) ● 발주방식 : 일반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 원 ● 준공정산 : - 원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1) 본 사업은 영천시장 방문객 및 인근주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임

2)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263번지 일대

○ 건립규모 : 지하1층~지하3층(연면적6,080.88$m^{2)}$, 주차면수:120대

○ 주요용도 : 공영주차장, 공원

○ 공사기간 : 2021.12월 ~ 2023.5월 (18개월) [예정]

○ 공 사 비 : 금22,965,080천원 [예정]

-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도 급 비	관 급 비	계
토목종합공사	토 목	10,549,209	1,147,091	11,696,300
	건 축	5,121,280	1,616,770	6,738,050
	조 경	1,273,339	0	1,273,339
	기 계	323,916	182,070	505,986
소 계				20,213,675
전기 공사		800,625	392,251	1,192,876
통신 공사		106,566	94,394	200,960
소방 공사		1,357,569	0	1,357,569
총 계				22,965,080

○ 공사 관련 용역비용

- 건설사업관리 용역비(감리비) : 금1,416,832천원
- 건설폐기물처리 용역비 : 금91,014천원
- 계측관리 용역비 : 금412,997천원
-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비 : 금35,129천원

나. 계약의 적정성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거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일반경쟁입찰로 적정하게 시행되었음

2) 독립문 교통센터 원인자분담금 공사(지하매설물 이설 등)

○ 공사기간 : 2021.10월중

※ 가스관로 및 통신관로는 통일로 굴착허가로 인해 2022.3월 착공 예정

○ 공 사 비 : 약10억원 [예정]

○ 이설 사유 : 공사부지 내 보동(영천시장길) 전신주, 지중선로 등 각종 지하 저촉매설물 등 위치하여 굴착공사 불가

3) 토목, 건축, 조경, 기계공사 계약 추진내용

구 분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측관리용역	문화재 시굴 및 표본 조사용역	토목공사	비고
입찰방법		제한(지역)경쟁입찰	전자공개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제한(지역)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	전자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입찰참가 자격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상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한 자 등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을 등록한 업체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등	나. 계약의적정성 1)입찰참가자격 참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착수일로부터 60일		
사업비	계	1,192,876	200,960	1,357,569	91,014	412,997	35,129	11,696,300	
	도급비	800,625	106,566	1,357,569	91,014	412,997	35,129	10,549,209	
	관급비	392,251	94,394	-	-	-	-	1,147,091	

4) 공사 시행부서 현황

구 분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지하주차장 전문공사(전기,통신,소방),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교통정보센터 신축공사(건축,전기,통신,소방,감리)
건축과	교통정보센터 신축공사 감독
토목과	지하주차장 토목종합공사(건축,조경,계측관리용역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발주 및 공사 감독
스마트정보과	지하주차장 통신공사 삼독

다. 사업능력 평가 결과

본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관련 공사 계약 추진내용”과 “4)공사 시행부서 현황”과 같이 도시재생과, 건축과, 토목과, 스마트정보과로 나누어 진행되었음.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발주계획(방침)에 의거 각 부서에서 추진되었음

라. 조사

1) 본 사업은 각 분야별 시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각 부서별 시행으로 진행되었음
2) 공사의 계약금액과 공사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 분야별 공사기간이 일정하게 18개월로 계획되어 있음

3. 종합판단

가. 본 공사는 각 전문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재생과가 행정적으로 본 사업을 총괄하고, 일부사업을 위의 나항, “4)공사 시행부서 현황”과 같이 공사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본 공사의 종류 (①전기공사 ②통신공사 ③소방공사 ④건설폐기물 처리용역 ⑤계측관리용역 ⑥문화재 시굴 및 표본 조사 용역 ⑦토목공사 ⑧건축공사 ⑨조경공사 ⑩기계공사)에 따라 공사의 시공절차상 선순위 공사와 병행공사로 분리되어 전문분야별 공사발주되어야 하나, 주관부서의 임의대로 시행부서를 지정함으로써 공사의 우선순위 및 병행추진

공전이 이원화되므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다. 현재 공사 중 토목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사전공사준비로 아직 착공되지 못하고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지장물이설중임.

4. 조치의견 : 권고

가. 본 공사의 특성상 추진총괄부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후에 구청 각 부서의 전문기능 및 공사의 추진 우선순위·병행시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어 공사가 늦어지고, 현재와 같은 업무분담 시행 시 사업지연이 계속되므로 사업부서를 재조정하기 바람.

나. 2021.12월 공사 착수 후, 모든 종류의 공사기간이 18개월로 일관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과 공정계획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가 장기간 지연(반복지연)되지 않게 조치하기 바람.

2022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사업기간 : 2022.3.24.~12.31. ● 사업내용 -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노후 및 파손된 포장도로를 신속히 정비 ● 위 치 : 서대문 관내 ● 사 업 비 : 20억원 ● 현 공 정 : 40%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1,781,76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959,252,000원 (낙찰율 : 87.285%) ● 계 약 일 : 2022-03-21 (착수일 : 2022-03-24) ● 발주방식 : 일반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원 ● 준공정산 : 원

본 사업은 서대문구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 중 노후 및 요철, 파손되어 주민 통행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통행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공사개요

1) 아스콘포장(t=5Cm): 225a, 콘크리트포장 : 12a, 측구정비 : 1,210m, 경계석정비 : 1,550m

- 폐기물은 별도 발주(정산)함
- 관급자재(아스콘) 소운반은 생산공장 지정 시 거리에 따라 적용함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2. 12. 31. 까지

3) 공사 등 발주 추진계획

- 2월: 15건(52%), 4월: 7건(91%), 4월이후: 2건(100%)

4) 사업비 집행

- 3월 : 선금 249,900천 원, 6월 : 기성금 595,700천 원, 12월 : 준공금 992,900천 원

나. 입찰공고내용

1) 지역의무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총액입찰, 적격심사

2) 공사구분 : 전문공사(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의 출자비율이 49%이상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사업물량 추정

1) 과거 3년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평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전년도 민원이 발생한 도로 위주로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있음.

2) 관내 포장도로는 서울시 다른 구보다 구배가 상대적으로 심해 도로 파손이 쉽게 발생하는 등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라. 선금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 1. 11시행」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 20억 원미만 공사의 경우 선금 의무지급율을 계약금액의 50%로 정하고, 계약금액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율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그런데도 위 업체에서 선금 249,900천 원을 청구하여 계약금액의 26%에 해당하는 선금만을 집행하였다.

3. 종합판단

가. 이 건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일반경쟁입찰, 서울특

별시 소재 업체로 제한, 적격심사 등을 거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건 2022. 3. 21. □□□□□□과 ‘2022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착공 3. 24., 준공 12. 31.)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착공일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공백이 우려된다.

다. 이 건 선금 의무지급율이 50%인데도 계약금액의 26%에 해당하는 선금만을 집행한 바 이는 계약업체에 불이익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선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 예산편성 절차나 사업물량 확정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가. 위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와 같은 연간단가계약의 경우 연간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개시연도 이전에 계약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람.

나. 이 건 적극적으로 계약업체에서 선금 의무지급율 이상 선금을 청구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람.

안산 휴식공간 조성 및 산책로 정비공사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안산 휴식공간 조성 및 산책로 정비공사 ● 사업기간 : 2021. 10. 8. ~ 2021. 12. 6. ● 사업내용 : 휴게공간 조성 및 흙콘크리트 포장 ● 위 치 : 연희동 산2-76일대 ● 사 업 비 : 595백만원 - 도급비 : 373,890천원 - 관급비 : 221,181천원 ● 현 공 정 : 100% - 준공일 : 2021. 12. 6.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571,937,6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373,890,000원 (낙찰율 : 87.549%) ● 계 약 일 : 2021-10-07 (착수일 : 2021-10-08)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증63,899,000원 ● 준공정산 : 371,500,000원 ● 준공정산 증감 : 감2,390,000원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1) 본 사업은 구민들이 해당부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2) 안산 내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산책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주민들의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

· 위 치 : 안산 연희동 산2-63 및 산책로(만남의 광장~용천배드민턴장)

· 공사내용 : 휴식공간 조성 및 산책로 정비

· 소요예산 : 금571,937,600원(금오억칠천일백구십삼만칠천육백원)

- 도급비 : 금346,797,000원

- 관급비 : 금225,140,600원 (관급자관급비 : 금77,443,950원, 도급자관급비 : 147,696,650원)

· 공사기간 : 2021.10.8.~2021.12.6.

나. 계약의 적정성

1) 입찰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집행기준 제4장

2) 입찰자격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지역)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산림토목(2016.7.29.이전 등록업체만 해당)]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숲길조성·관리 100%

3. 종합판단

1) 본 사업은 해당 부지를 구청에서 매수하여

2) 제한경쟁입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집행기준 제4장」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지역)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산림토목(2016.7.29.이전 등록업체만 해당)]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되어 있음.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은 지역제한 및 실적제한 등으로 입찰참가자의 다수가 참석하여야 하는 것이 최고의 입찰제도의 방향인데, 과대한 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됨.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불특정 다수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생태경관 보행구역 조성사업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태경관 보행구역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1. 12. 10. ~ 2022. 7. 29. ● 사업내용 : 서대문구 5개산 산책로 연결 ● 위 치 : 안산, 인왕산, 북한산, 백련산, 궁동산 ● 사 업 비 : 1,060백만원 - 도급비 : 649,871천원 - 관급비 : 245,167천원 ● 현 공 정 : 80% - 준공일자 : 2022. 7. 29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982,651,59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615,700,000원 (낙찰율 : 88.266%) ● 계 약 일 : 2021-12-07 (착수일 : 2021-12-10)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2차 ● 계약금액 증감 : 감 34,171천원 ● 준공정산 : 원 ※ 준공정산된 경우에도 별도 기재

우리 구 4개산 보행길이 일부 단절되어 산과 홍제천을 연결하고 통일된 안내체계를 보완하여 이용객들이 4개산을 하나의 보행구역으로 인식하도록 조성하는 사업임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1) 사업내용

○ 4개산과 홍제천을 연결하여 순환하는 생태경관 보행구역 조성
(인왕산~홍제천~북한산~백련산~홍제천~안산 non-stop 보행네트워크 조성)

○ 생태경관 보행구역 안내체계 구축
(안내판 디자인을 통합·정비하여 시인성 확보)

○ 생태경관 보행구역 가상공간 구축
(사계절 보행구역 촬영 및 QR코드 설치로 언택트 가상공간 체험)
※ 카카오맵 로드뷰 연계방안 모색

2) 총 사업개요

- 위치: 인왕산~홍제천~북한산~백련산~홍제천~안산
- 규모: 연장 20.5km (인왕산 L=3km, 북한산 L=4.5km, 백련산 L=2.5km,

안산 L=7km, 홍제천 L=3.5km)

- 사업기간: 2020.4월~2021.10월
- 사업비: 총 2,281백만 원 (시비 931, 구비 1,350)

· 인왕산~홍제천~북한산 / 백련산~홍제천~안산 연결	(구비 1,060)
· 생태경관 보행구역 가상공간 구축	(구비 240)
· 북한산~백련산 연결	(시비 500)
· 인왕산 둘레길 조성	(시비 431 / 구비 50)

3) 본 공사 사업개요

- 공사명: 생태경관 보행구역 조성사업
- 위치: 안산~인왕산~북한산~백련산~궁동산
- 총공사비: 금982,651,590원
- 공사기간: 2021.12.10.~2022.7.29.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나. 계약의 적정성

1) 시행방법: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집행기준 제4장

2) 입찰자격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지역)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산림토목(2016.7.29.이전 등록업체만 해당)]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숲길조성·관리 100%

3. 종합판단

가. 계약의 시행방법, 입찰자격 등 계약은 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

다.

나.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지역)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산림토목(2016.7.29.이전 등록업체만 해당)]등록을 필한 업체”로 실적 제한되어 있다.

다. 설계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현황 및 문제점	검토결과	비고
식재공	▶ 생태경관 구간별 시설물 정비구간에 대한 식재수량 부족 - 1구간: 목계단 103단, 황매화 280주 - 2구간: 인조화강석 블록 528m2 - 4구간: 목계단 1,224단, 야자매트 275m, 황매화 940주, 화살나무 3,140주, 줄사철 250본 - 5구간: 목계단 37단, 야자매트 283m	황매화(H1.0*W0.4) : 1,220주 → 7,000주 화살나무(H0.8*W0.4) : 1,220주 → 2,000주 개나리(5가지*H1.0) : 1,550주 → 2,000주 줄사철(8cm) : 250본 → 3,000본	개략공사비 증)32,483,320원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낙찰차액 사용 및 식재수량의 증가 등 설계변경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잔여예산을 사용하는 예산 집행의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낙찰차액 사용 또는 식재수량 증가 변경 시에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할 것

백련근린공원(서대문) 조성(홍은동 산11-314)

1. 사업개요

<table>
<tr><td rowspan="2">사업개요</td><td rowspan="2">● 사 업 명 : 백련근린공원(서대문) 조성
(홍은동 산11-314)
● 사업기간 : 2021. 12. ~ 2022. 12.
● 사업내용
- 무허가건물철거 및 공원조성 등
● 위 치 : 홍은동 산11-314
● 사 업 비 : 720,203,780원
- 도급비: 620,820,900
- 관급비: 99,382,880
● 준공일자 : 2022. 12.</td><td>입찰 또는 계약 현황</td><td>● 발주금액 : 741,650,880원
※ 도급(642,268,000), 관급(99,382,880)
● 계약금액 : 566,972,310원
(낙찰율 : 88.27%)
● 계 약 일 : 2021-12-27
(착수일 : 2021-12-27)
● 발주방식 : 제한경쟁</td></tr>
<tr><td>계약 내용 변경 현황</td><td>●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증53,848,590원
● 준공정산 : 620,820,900원</td></tr>
</tabl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의 토지보상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상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함양을 위한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 입찰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사업과 관련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공사의 타당성

- 철거공: 기존무허가건물 5동, 담장, 석축, 옹벽 등 철거
- 포장공: 잔디보호매트 112㎡, 야자매트 43㎡, 경화흙포장 614㎡ 등
- 시설물공: 목재난간, 블록담장, 데크, 목교, 앉음벽 설치 등
- 식재공: 주목, 소나무 등 교목 24종, 사철나무, 자산홍 등 관목 14종, 맥문동 수호초 등 초화류 16종 식재
- 관로공: 우수관 31m, 돌붙임수로 126m, 집수정 설치 등

다. 설계 변경

- 현장 여건에 따라 소나무와 피라칸사스 수량증가

3. 종합판단

가. 계약방법 및 입찰자격은 적정하고, ○○○○○○(주)에 낙찰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공사 내역 및 시공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 토지보상 일정이 지연됨에 따른 준공 연기와 설계 변경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없음

백련근린공원(서대문) 조성(홍은동 산26-133일대)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백련근린공원(서대문) 조성 (홍은동 산26-133일대) ● 사업기간 : 2021.12.10.~2022.12.27. ● 사업내용 : 신기한놀이터 3호 조성 ● 위 치 : 홍은동 산26-133일대 ● 사 업 비 : 757,594,390 - 도급비 : 688,894,410 - 관급비 : 68,699,980 ● 준공일 2022. 12. 27.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881,693,000원 ※ 도급(736,089,000), 관급(145,604,000) ● 계약금액 : 640,887,000원 (낙찰율 : 87.06%) ● 계 약 일 : 2021-12-27 (착수일 : 2021-12-27)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2회 ● 계약금액 증감: 1차 48,533,000원 증액 , 2차 525,590원 감액 ● 준공정산 : 688,894,410원

무허가 건축물로 훼손된 공원 부지를 서대문 협치 특화사업인 신기한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산 26-184로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집행기준 제4장

2) 입찰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사업과 관련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공사의 타당성

- 어린이 디자이너 워크숍을 통해 설계한 놀이터 조성
- 인근 매바위 유아숲 체험장을 활용하여 놀이터 활성화
- 공원 훼손지에 대하여 생태복원

다. 설계 변경

- 1차 설계변경(푸른도시과-24080, 2021. 12. 27.)에는 회양목 250주→300주, 백철쭉 160주→500주, 산철쭉 200주→1,000주, 조팝나무 290주→1,000주, 좀작살나무 250주→1,000주, 황매화 200주→2,000주, 화살나무 30주→500주, 수호초 740본→2,000본으로 설계 변경되어 32,175,110원이 증액되었다.
- 2차 설계변경(푸른도시과-23297, 2022. 12. 20.)에는 총액 변경은 없으나 철거공은 (감) 17,548천원, 식재공은 (증) 60,538천원, 포장 및 시설공은 (증) 105,103천원, 상수 및 배수공은 (증) 6,788천원, 기타 (감) 187,120천원, 제경비 정산 (증) 32,239천원, 관급자재 (감) 76,904천원이 되었다.

3. 종합판단

가. 계약방법 및 입찰자격은 적정하고, ㈜○○○○에 낙찰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 토지보상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준공 연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공사 내역 및 시공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2차 설계변경 시에는 1차 설계 변경에 의한 회양목 250주→300주에서 0으로, 백철쭉 160주→500주에서 0으로, 산철쭉 200주→1,000주에서 0으로, 조팝나무 290주→1,000주에서 0으로, 좀작살나무 250주→1,000주에서 0으로, 황매화 200주→2,000주에서 0으로, 화살나무 30주→500주에서 0으로, 수호초 740본→2,000본에서 0으로로 변경된 바, 이를 변경하기 위한 방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2차 설계변경에 있어서 측백 39주, 소나무(장송) 5주, 청단풍 6주, 이팝나무 33주, 영춘화 100주, 화살나무 970주, 사계덩굴장미 60주, 식물매트(줄사철) 57㎡로 방침을 받았으나 준공에 있어서 젓나무 20주, 복자기나무 8주, 산딸기나무나무 15주, 홍단풍 13주, 개쉬땅 120주, 꽃댕강나무 200주, 나무수국 70주, 덜꿩나무 1,040주, 산철쭉 1150주, 자산홍

1,250주를 신규 식재하였으며, 화살나무는 970주로 방침을 받았으나 470주 식재, 식물매트(줄사철) 57㎡로 방침을 받았으나 50㎡를 시공하였고, 식물매트(옥잠화) 20㎡와 식물매트(비비추) 20㎡를 신규로 식재하여 준공 서류를 작성한 바, 이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마. 당초 홍은동 산 26-133일대에 설계하였으나 산 26-184로 변경되었으므로 준공도서의 사업명은 산 26-184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및 감사청구

가. 당초 홍은동 산 26-133일대로 표기되었으나 산 26-184로 변경되었으므로 준공도서 표지는 산 26-184로 표기하기 바람.<권고>

나. 1차 설계변경 사항이 변경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으며, 이를 변경할 시에는 2차 설계변경에서 변경 사항을 전부 기재하여 방침을 받아야 하고, 2차 설계변경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되어야 하나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준공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함.<감사청구>

제2장 용역

서대문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대문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용역 ● 사업기간 : 2022.05.06.~12.10. ● 사업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제척 후 일반 지구단위계획으로 운용하기 위한 관리계획 보완 ● 위 치 - 서대문구 재정비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가재울, 북아현 아현) ● 사 업 비 : 116,000,000원(구비) ● 현 공 정 : 20.0%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116,00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102,097,000원 (낙찰율 : 88.047%) ● 계 약 일 : 2022-05-06 (착수일 : 2022-05-11)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 계약금액 증감 : 원 ● 준공정산 : 원 ※ 준공정산된 경우에도 별도 기재

민간부분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의해 작성되는 서대문구 북아현동·가재울·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민간부분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표시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1) 사업내용

○ 서부권의 주거·문화복지기능이 조화된 실주거지로 개발하고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개편과 안산의 자연환경과 연계된 “자연친화도시”, 지구내의 교육시설과 연계한 “교육문화도시”, 다양한 계측의 커뮤니티를 위한 “인간친화적도시” 조성을 통해 〈친환경 녹색 문화타운〉을 목표로 함.

○ 재정비 촉진지역내의 존치관리구역의 경우 재정비 촉진 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로의 관리 필요성 미흡

○ 서대문구의 재정비 촉진지구지정 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주기단위계획의 제척 필요성 검토

나.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2) 입찰참가자격은 다음과 같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기술사 사무소 등록 업체
- 단독이행만 허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마감일 전일(2022.4.12.<화>18:00)까지 등록하여야 함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낙찰자 선정

- 도급사 : ㈜□□□□□□□□□
- 계약금액 : 금102,097,000원(낙찰률 88.047%)
- 계약일자 : 2022.5.6.
- 용역기간 : 당초 2022.5.11.~2022.12.10.
  변경 2022.5.11.~2023.5.31.(6개월 연장)

3. 종합판단

가. 본 용역의 계약절차는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나. 본 사업은 지구단위별로 추진되는 계획사업으로 과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① 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 내 일부지역의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제척필요성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여부 검토

②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심의완료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협의 추진(2023년 심의 예정)

다. 용역기간이 당초 2022.5.11.~12.10.에서 2022.5.11.~2023.5.31.(6개월) 변경되었음.

4. 조치의견 : 없음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2022.05.19.)로부터 18개월 ● 사업내용 - 정비계획(안) 작성 -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 분석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등 ● 위 치 : 홍은동 8-400번지 일대 ● 사 업 비 : 420,000천원(시50%,구50%) ● 현 공 정 : 49.49%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429,59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420,000,000원 (낙찰율 : 97.767%) ● 계 약 일 : 2022-05-19 (착수일 : 2022-05-19)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0 ● 계약금액 증감 : 0원 ● 준공정산 : 252,000,000원

본 과업은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에 대하여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1)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2조제7항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서울시 (민간)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신속통합기획)

2)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2022.05.19.~2023.11.18.)
- 용역예산 : 금429,590,000원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계약의 적정성

1) 시행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신고)를 필한 업체

※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①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참여비율은 70% 이내로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 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③ 본입찰 참가자(공동수급 구성원 포함)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3)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 2022.1.7.) 및 서대문구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선순위자와 협

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20	발 주 부 서 평 가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2		
			실적금액	3		
		◦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3		
		◦ 경영상태	자본비율	1		
			유동비율	1		
	정성적 평가분야	◦ 기초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10	70	평가위원회 평 가
		◦ 정비계획 기본 구상안		20		
		◦ 정비계획 수립 내용		30		
		◦ 과제 실현 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10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평점산식적용 평 가
합 계				100		

4) 평가결과 :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구분 \ 업체명		입찰참가업체		비고
		낙찰업체(A업체)	B업체	
기술평가점수 (90점)	정량적평가(20점)	20	20	①
	정성적평가(70점)	68.8	59.2	②
가격평가점수(10점)		9.43	10	③
합 계		98.23	89.20	①+②+③
협상순위		1	2	

3. 종합판단

가. 본 사업은 제안서 평가결과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낙찰자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 2022.1.7.) 및 서대문구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였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나. 본 공사는 2021년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민간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정비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주택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과업지시서에 의거 착수보고(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1회/2개월), 최종보고(과업 완료 30일 이전) 등 3회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용역수행 공정 고려하여 조정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라. 주민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 등의 절차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없음

서대문형무소 구치감 부지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대문형무소 구치감 부지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 사업기간 : 2021. 9. 3.~2021. 12. 27. ● 사업내용 - 구치감청사 건물 등 매장문화재 유구 조사 ● 위 치 : 서대문구 통일로 251 ● 사 업 비 : 250,734,000원 ※ 설계변경 금액 : 감)16,809,000원 ● 현 공 정 : 100% ※ 준공일자 : 2021. 12. 27.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323,785,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250,734,000원 (낙찰율 : 83.085%) ● 계 약 일 : 2021-09-02 (착수일 : 2021-09-03)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감)16,809,000원 ● 준공정산 : 원

서대문형무소 구치감청사 부지 일대에 대한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유적 보존 및 향후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본 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시는 (1) 사업의 타당성, (2)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3) 설계변경의 적절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서대문형무소 구치감청사 부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시굴조사 시 확인된 유구의 전체적인 범위와 구조 및 유물을 확인하여 역사문화유적 보존 및 향후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본 사업이 시작되었다. 소요예산은 593,785,000원으로 균특보조금 70%, 시비 30%로 산정하였다.

나.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1) 본 사업은 최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1인 견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하지만, 일상감사를 통하여 본 사업은 ① 특정인의 기술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는 기존 시굴업체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달성할 수 없으므로(시굴업체는 본 사업의 정밀발굴조사기관과 일치하지 않음) 수의계약(1인 견적)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지방계약법 제9조 원칙대로 일반 경쟁입찰로 진행할 것을 조치받아 일반 경쟁입찰을 진행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문화재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으로 입찰참가 등록함 업체(단독이행만 허용)로 자격을 제한하였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본점소재지 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업체여야 한다.

3) 조달청 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여 투찰금액 267,543,000원으로 입찰한 재단법인 ○○○○○○○○(대표자 △△)가 계약 대상자로 결정되어 전자계약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설계변경의 적절성

1) 계약진행 중 토사 반출 관련 사업비(직접경비) 부족으로 조사면적이 축소(4,915㎡-> 3,280㎡)되었다. 이 사건 용역 현장은 발굴한 토사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용역 현장 일부에

적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후 토사제거업체가 발굴업체가 적재한 토사를 조금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최초 예상했던 토사 이상이 발굴되어 토사제거업체와의 계약금액으로는 발굴된 모든 토사를 제거할 수 없었다. 토사제거업체와는 제거하는 토사의 무게(톤당)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토사 모두를 제거하지 못하였음에도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비되었다.

2) 이와 같은 이유로 발굴대상 토지 위에 적재되어 있는 토사를 제거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업체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발굴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과업범위 축소에 따른 정산을 진행하였고, 기존에 267,543,000원이었으나 250,734,000원으로 16,809,000원 감소하였다.

3. 종합판단

가. 서대문형무소 구치감청사 부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역사문화유적 보존 및 향후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용역의 진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최초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해당 계약의 낙찰 기준인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발생할 수 없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적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계약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이 사건 사업은 1차례 설계변경이 되었고, 과업범위 면적이 1/3 가량 축소되었다. 서대문 형무소 주위에 발굴한 토사를 적재할 공간이 없어 이 사건 용역 현장 일부에 적재하였고 예상보다 많은 토사가 발굴되어 무게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토사제거업체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모두 소진되어 적재된 토사를 제거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발굴업체는 최

초 계획된 과업범위 면적을 모두 발굴하지 못하였다. 용역 금액은 과업범위 면적과 1:1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소된 면적에 비하여 계약금액은 매우 적은 금액이 감소하였다. 발굴할 토사의 양을 예측하기 힘들고 이 사건 용역 현장은 외부가 아닌 발굴대상 토지 위에 토사를 적재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결국 이 사건 용역은 계약금액 대부분을 사용하고 실제 발굴은 최초 예정된 면적의 2/3 가량 밖에 진행하지 못한 바, 추후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용역 현장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계약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국, 토사제거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부족으로 계약이 진행되지 못한 바,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할 당시, 배정된 예산으로 이 사건 계약 면적 전부를 발굴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면 발굴 업체와 계약 면적을 축소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추후, 계약 면적을 축소하여 정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이 사건 용역 현장과 같이 발굴된 토사를 발굴 대상 토지 지상에 적재할 수밖에 없는 현장인 경우, 배정된 예산으로 발굴 가능한 범위 면적을 확인하여 해당 면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사제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후 발굴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것.

서대문역 1번 출구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대문역 1번 출구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2022.3.7.~7.4 ● 사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L=513m ● 위 치 : 충정로 73~통일로 97 ● 사 업 비 : 131,000천원 ● 현 공 정 : 100% ※ 준공일 : 2022.7.4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149,732,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131,000,000원 (낙찰율 : 88.419%) ● 계 약 일 : 2022-03-04 (착수일 : 2022-03-07)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 계약금액 증감 : 원 ● 준공정산 : 131,000,000원 ※ 준공정산된 경우에도 별도 기재

서대문구 충정로73번지 앞 (5호선 서대문역 11번출구 주변) 일대는 2021.7.9.(월) 14:20~15:40, 시간당 최대 강수량 64.5mm (1시간 강우 강도: 96.8.mm)로 하수역류로 인한 맨홀뚜껑(관로 Φ900mm) 이탈 및 도로포장구간 볼록하게 들뜸현상이 발생하여 공공하수도 파손 확인 및 수리계산 통수능력 검토가 필요한 사업임.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본 과업은 서대문역 1번출구 주변의 통수력이 부족하여 강우 시 역류한 하수관로를 강우강도 30년 빈도 적용 적정관경으로 확대 개량함으로써 통수능력을 확보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 과업의 개요
  1) 설계종류 : 기본 및 실시설계
  2) 과업의 위치 및 규모
    - 위치: 서대문구 충정로 73~통일로 97
    - 규모: 하수관로 확대 개량 D=900~1350mm → 1350mm~□2.0×2.0m, L=513m
  3) 과업의 범위

(1) 배수유역 수리검토 및 통수능력 검토(SWMM 및 합리적 검토 동시 수행)
(2) 적정 통수능력 확보를 위한 관경 확대 및 공사 시 지장물 검토
(3) 원형관로 및 사각형거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4) 과업의 규모
(1) 기본 및 실시설계 L=513m
(2) 노선측량 및 관거현황조사 L=513m
(3) 시험터파기 A=35m^2 및 지반조사 1공

5)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내용이 현저하게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④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나.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에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입찰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동일 용역 실적을 인정하며,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
  · 용역이행실적 대상용역 : 하수관로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기준금액(추정가격) : 136,120,000원

3. 종합판단

가. 본 사업의 입찰 방법은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로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1규정, 「기술사법」 제6조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낙찰자가 결정되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본 및 실시설계는 다음과 같다.

1) 낙찰자 결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건 명	대상업체	낙찰가	비고
제한경쟁입찰	서대문역1번출구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명: *********(주)	131,000,000원 (낙찰율 88.419%)	

2)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유출계수 적용과 내용

① 하수로정비 기본계획 2030 토지이용별 적용 유출계수(기준)

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농지(논)	농지(밭)	비고
유출계수(c)	0.65	0.80	0.70	0.35	0.75	0.5	

② 상위 계획인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8. 서울특별시)」에서 용산 배수분, 총괄유출계수 c=0.65 적용

③ 금회 산출한 서대문역 1번출구 주변 냉천배수분구유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유출계수 평균값이 c=0.65이나 금회 수리검토는 c=0.7 적용

④ 상기와 같이 유출계수 c=0.7 적용하였으나 서대문역 1번출구는 지형적으로 저지대로 주변의 우수가 일시에 집중될 수 있으며 또한 주변의 건축물 밀집 및 다수상업지역으로, 기상이변 등을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적용함이 요구된다.

3) 공법 관련

실시설계 토공굴착공법, 흙막이공법은 ①간이가시설공법(S.K판넬) ②

H-pilet 토류판공법 ③Sheet pile공법 등을 적용하였으나 관로의 깊이가 설계도 공사계획종평면도(1~2, 도면번호 C-013~014)에 의거 토피가 최대 약 1.3m로 가시설은 저렴한 간이가시설공법(S.K판넬)로 적용되어 있다.

위에 기술된 낙찰자 결정, 유출계수 적용과 내용, 공법 관련 사항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없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용역 ● 사업기간 : 2021. 12. 15.~2022. 6. 12. ● 사업내용 - 실감콘텐츠(AR) 제작 - 인터렉티브 미디어월 구축 - 실감콘텐츠 체험존 구축 ● 위 치 :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 ● 사 업 비 : 515,100천원 ● 현 공 정 : 준공완료(준공일 2022. 6. 12.)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545,00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515,100,000원 (낙찰율 : 94.513%) ● 계 약 일 : 2021-12-15 (착수일 : 2021-12-15)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0 ● 계약금액 증감 : 0원 ● 준공정산 : 515,100천원

실감콘텐츠 기술을 활용하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주요 전시물을 관람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4차산업에 중요한 ICT기술을 박물관 전시장에 활용하여 박물과의 고유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시민 관람·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계약이 체결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시는 (1) 사업의 타당성, (2)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 소재 서울특별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i) 실감콘텐츠 기술을 활용하여 박물관 주요 전시물을 관람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ii) 박물관 내에 주요 전시물을 증강현실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iii) 박물관 주요 요소인 ‘생명의 역사’ 코너를 반응·제어형 인터랙티브 미디어월로 구축하여 차별화된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iv) ‘생태계’ 코너에 실감콘텐츠 체험존을 조성하여 스마트 기기 미사용 관람객에게 체험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박물관의 특성을 고

려하여 관람·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람객의 만족도 향상 및 재방문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사업이 진행되었다.

나.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직접 생산증명서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를 각 소지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 및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로 각 신고를 필한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였고, 입찰참자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이후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2)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점수 90점(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80점)과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로 진행하고 정량평가는 서대문구청이 실시하고 정성평가는 외부 평가위원이 진행하여,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3) 7명의 평가위원들이 ㈜☆☆를 포함하여 6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가 정량적 평가 9.5점, 정성적 평가 71점, 입찰가격평가 8.46점 종합평점 88.96점으로 가장 높아 우선 협상대상자로 계약을 진행하였다. 구청은 ㈜☆☆와 최종협상을 진행하면서 실감콘텐츠 제작, '생명의 역사' 인터랙티브 미디어월 구축, '생태계' 코너 체험존 구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용역 내용을 문서화하였다.

3. 종합판단

가. 이 사건 사업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성하여 다소 노후화된 서대문자연사박물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등 각종 기술 융합 콘텐츠를 접목하여 모든 연령층이 쉽고 빠르게 접근하고 각종 실감콘텐츠 체험존 및 2차 개발품 개발 등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관람객의 만족도 증진 및 재방문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긍적적으로 평가된다.

2022. 11. 10. 현장을 방문하여 1층 및 2층에 실감콘텐츠(AR) 10종, 2층 생명진화관 입구에 인터랙티브 미디어월, 1층 생태계에 실감콘텐츠 체험존이 구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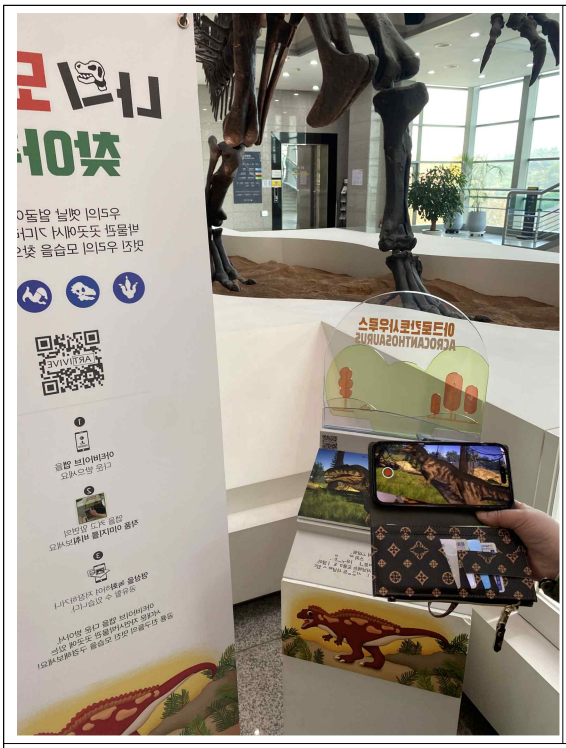

실감콘텐츠(AR) 10여종 중 2가지

실감콘텐츠 체험존

인터랙티브 미디어월

나. 제안서 평가 역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였고, 정성적 평가는 전략 및 방법 10점, 수행계획 20점, 전시공간연출 적용기술 15점, 프로젝트 추진관리 15점, 프로젝트 사후지원 10점, 기타 10점으로, 그리고 각 정성적 평가 항목도 2~3 분야로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한 바, 이 사건 용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 기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종합평점 최고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선정된 업체와 2, 3등 업체와의 점수 차이가 100점을 기준으로 각 0.63점, 0.74점 차이 밖에 나지 않은 바, 각 평가배점을 너무 세분화하여 진행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우선 협상대상자인 ㈜☆☆와 최종 협상을 진행하면서 추후 박물관에서 진행할 사업을 염두에 두어 데이터를 제공받고 용역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후 최종 협의한 내용대로 계약이 진행된 바 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없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메타버스 자연사박물관 구축 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메타버스 자연사박물관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2022. 04. 29.~10.25. ● 사업내용 - 인공지능 메타버스 하이브리드 자연사박물관 구축 - 자연사박물관 전시물 구현 - 인공지능을 포함한 인공인간 생성 ● 위 치 :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 ● 사 업 비 : 497,130천원 ● 현 공 정 : 31%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497,613,81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497,130,000원 (낙찰율 : 99.902%) ● 계 약 일 : 2022-04-28 (착수일 : 2022-04-29)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없음 ● 계약금액 증감 : 원 ● 준공정산 : 원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을 융합한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하이브리드 박물관을 구축하여 박물관 관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새롭고 신비한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청렴감시 활동은 사업의 타당성,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계약 방법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었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사업예산의 적정성, 계약방법

1) 사업내용

-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과 동일한 가상공간을 구현하여 관람객들이 아바타를 만들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관람 가능
- 시공간 제약없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 구현 (예: 고생대, 중생대, 여행, 우주여행 등)
- 인공지능 아바타 구현하여 전시품 설명 및 챗봇기능 탑재

2) 입찰공고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록한 업체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85% 이상인 제안서로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기술제안서 배점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3)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80점)과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로 진행하되, 정성평가는 외부평가위원이 실시하며, 협상적격자는 70점 이상이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선정

- 정량평가 : 10점
  ☞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사업수행실적
- 정성평가 : 80점
  ☞ 전략 및 방법, 기술 및 성능, 품질 및 프로젝트 관리, 추가제안 등 기타
- 가격평가 : 10점
  ☞ 입찰가격

3. 종합판단

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전시 관람이 가능한 한계점에 대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메타기술을 활용하여 아바타를 새로운 형식의 온라인 전시문화를 구축하는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 사업 예산(500백만 원) 편성은 기존 다른 사업(전남 관광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부산수학문화관 메타버스 공간, 서경대학교 메타버스 플랫폼 시스템 등) 소요 예산을 참고하여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 용역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중소기업으로 입찰 제한,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라. 위 메타버스 자연사박물관 용역사업을 완료한 후 2022년 12월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서대문구 구민 등 일반인들이 박물관메타버스에 입장하기 위해 홈페이지 입장화면을 클릭하면 화면이 다운되어 입장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서대문구 구민 등 시민들이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박물관 메타버스에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강화하고, 위 메타버스 입장 장애 원인을 찾아 개선시키기 바람.

안산근린공원 1지구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안산근린공원 1지구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2021. 10. 15.~ 2022. 9 30. ●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 위 치 : 홍제동 산41-38일대 ● 사 업 비 : 56,369천원 ● 준공일자 : 2022. 8. 31.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63,976,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56,369,660원 (낙찰율 : 88.011%) ● 계 약 일 : 2021-10-14 (착수일 : 2021-10-15) ● 발주방식 : 전자수의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 ● 준공정산 : - ※ 준공정산된 경우에도 별도 기재

무허가 건축물로 훼손된 공원부지를 서대문 협치 특화사업인 신기한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전자공개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2) 입찰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엔지니어링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용역의 타당성

-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

다. 준공기한 연장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안산근린공원 1지구에서「고은 1지구, 고은 3지구, 연희 2지구, 연희 3지구」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설계하고자 용역준공기한을 2022. 08. 31.에서 2022. 09. 30.까지 연기

3. 종합판단

가. 계약방법 및 입찰자격은 적정하고, ㈜◎◎◎◎에 낙찰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용역보고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대상지를 변경하여 설계하고자 용역준공기한을 2022. 08. 31.에서 2022. 09. 30.까지 연기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안산근린공원 1지구를「고은 1지구, 고은 3지구, 연희 2지구, 연희 3지구」로 나눈 근거와 설계용역을 실시한 순서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안산근린공원 1지구를「고은 1지구, 고은 3지구, 연희 2지구, 연희 3지구」로 나눈 근거를 제시하기 바라며, 추후에는 지구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계를 실시하기 바람.

제3장 물품

1. 2021년 CCTV 시스템 통합 구매 설치
2. 2021년 하반기 CCTV 통합 구매 설치
3. 2021년 CCTV 금속기둥 구매
4. 2021년 하반기 CCTV 금속기둥 구매

1. 사업개요

(1) 2021년 CCTV 시스템 통합 구매 설치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CCTV 시스템 통합 구매 설치 ● 사업기간 : 2021.6.25.~10.23. ● 사업내용 - 총42개소 109대설치, 비상벨57개소 설치 ● 위 치 : 독립무로12나길 33외 41개소 ● 사 업 비 : 금577,873,000원 ※ 설계변경 금액 △33,727,000원 ● 현 공 정 : 준공완료(100%) ※ 준공일 : 10.23.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679,565,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577,873,000원 (낙찰율 : 89.998%) ● 계 약 일 : 2021-06-25 (착수일 : -)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33,727,000원 ● 준공정산 : 577,873,000원

(2) 2021년 하반기 CCTV 통합 구매 설치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하반기 CCTV 통합구매 설치 ● 사업기간 : 2021.12.17. ~ 2022.4.16. ● 사업내용 - 48개소 193대 설치 ● 위 치 : 거북골로33 외 47개소 ● 사 업 비 : 588,179,000원 ※ 설계변경 금액 : △28,138,680원 ● 현 공 정 : 준공완료(100%) ※ 준공일 : 2022.4.16.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700,361,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588,179,000원 (낙찰율 : 88%) ● 계 약 일 : 2021-12-17 (착수일 : -) ● 발주방식 : 수의계약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28,138,680원 ● 준공정산 : 588,179,000원

(3) 2021년 CCTV 금속기둥 구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CCTV 금속기둥 구매 ● 사업기간 : 2021.7.28. ~ 9.1 ● 사업내용 - 폴21개, 암29개, 함체33개, 브라켓13개, IP강관주3개 ● 위 치 : 연희맛로 23외 32개소 ● 사 업 비 : 60,629,940원 ● 현 공 정 : 준공완료 (100%) ※ 준공일 : 2021.9.1.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68,13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60,629,940원 (낙찰율 : 88.161%) ● 계 약 일 : 2021-07-28 (착수일 : -)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없음 ● 계약금액 증감 : - 원 ● 준공정산 : - 원

(4) 2021년 하반기 CCTV 금속기둥 구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하반기CCTV 금속기둥 구매 ● 사업기간 : 2021.12.16. ~ 3.14. ● 사업내용 - 폴14개, 암48개, 함체32개, 브라켓5개 등 ● 위 치 : 거북골로 33외 47개소 ● 사 업 비 : 50,008,750원 ● 현 공 정 : 준공완료(100%) ※ 준공일 : 2022.3.14.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56,577,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50,008,750원 (낙찰율 : 88.020%) ● 계 약 일 : 2021-12-16 (착수일 : -)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없음 ● 계약금액 증감 : 0원 ● 준공정산 : - 원

서대문구 관내 생활방범, 어린이보호, 공원방범 및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 CCTV와 금속기둥(CCTV지주)을 2회에 걸쳐 통합 구매 설치하였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시는 (1) 사업의 타당성 (2) 계약의 적정성 (3) 분리 발주의 타당성 (4) 계약변경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추진 개요

[추진 근거]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서대문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추진방향]

○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스마트정보과에서 일괄 발주

- 현장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진행

○ 지주 설치비용 없는 한전주 보안등 일체형 CCTV 설치방식 확대로 예산 절감 및 설치 민원 감소

○ 통신망 장애 발생 시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가통신망 추진

[사업내용]

○ CCTV 총 42개소 109대 설치(신설 : 40개소 105대/성능개선 2개소 4대)

- 생활방범 CCTV(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 신규 27개소 71대
  ☞자치행정과 : 14개소 47대 ☞청소행정과 : 13개소 24대
- 공원방범 CCTV(푸른도시과) : 신규 11개소 26대
- 어린이보호 CCTV(교통행정과) : 신규 2개소 8대(주·정차 단속 겸용)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교통관리과) : 성능개선 2개소 4대(기존 방범용)
- CCTV 영상 저장용 스토리지 시스템 용량 증설 : 200TByte

○ CCTV 금속기둥

- CCTV 폴 17개, 암 37개, 전주형 암 11개,
- CCTV함체(폴 부착형 17개, 전주 설치 11개, 연계설치 4개)
- 고정카메라 브라켓 5개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 영상감시장치 직접생산증명서 소지한 업체와 계약 추진
- 제안평가위원회 개최
  · 정량평가(20점) : 경영상태, 사업이행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신인도
  · 정성평가(70점) : 일반부문, 시스템 구축 부문, 사업관리 부문, 지원부문, 특별제안 등
  · 가격평가(10점)

나. 분리발주의 타당성

1) 과거 CCTV와 금속기둥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통합하여 발주하였으나 2018. 12. 28. 금속기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금속기둥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와 분리 발주하도록 하고 있음

2)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발주하는 것은 시비 예산이 4~5월경에 시달되고 국비 예산은 8~9월경 시달되고 있을 뿐 아니라 CCTV설치 공사기간이 통상 120일 내지 150일 소요됨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분리발주하고 있음

다. 계약변경의 적정성

투입인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투입인원 중 상당부분은 일용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감액 정산한 것임

3. 종합판단

가. 이 건 생활방범, 어린이보호, 공원방범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CCTV를 구매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건 입찰을 통해 제안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또한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와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CCTV와 금속기둥을 정부방침에 따라 분리하여 발주하고, CCTV 시비예산과 국비예산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시달되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분리 발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변경한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없음

제4장 수의계약

발해태조건국지·명림답부전 보존처리 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발해태조건국지·명림답부전 보존처리 용역 ● 사업기간 : 2021. 11. 15.~2022. 5. 12. ● 사업내용 -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실시 ● 위 치 : 연세로50 연세대학교박물관 ● 사 업 비 : 33,601,170원 ● 현 공 정 : 100%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38,28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33,601,170원 (낙찰율 : 88.069%) ● 계 약 일 : 2021-11-12 (착수일 : 2021-11-15) ● 발주방식 : 전자수의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원 ● 준공정산 : 원

발해태조건국지·명림답부전에 탈산 및 훈증처리, 손실부 보충, 배접을 통한 지면 강화, 장정 형태 개선(겉표지 신규제작 등), 보관상자 및 영인본 제작을 위하여 본 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시는 (1) 사업의 타당성, (2)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3) 보존 처리 계획 용역과 실제 용역 사업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동일한 대상자가 선정된 것의 적절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해당 유물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인 동산문화재로, 양지의 황변, 갈색반점, 산성화 및 건조화 등으로 인한 바스라짐, 찢김, 마모 및 말림 현상이 발생하여, 탄산처리, 보강, 배접 빛 장정 등의 보존처리가 필요하고 이용자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등 문화재 활용과 원본 보호를 위한 영인본 제작이 필요하며, 포갑, 보관한 제작이 필요하여 본 사업이 시작되었다. 사업예산은 국비 2,400만원 시비 2,4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 나라장터에 전문문화재수리업 중 보존과학업(1127) 업종을 등록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표구공 1명 이상 보유한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였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여야 한다.

2) 조달청 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여 견적가격 33,601,170원으로 입찰한 △△△△△△△△△△△(대표 ○○○)가 계약 대상자로 결정되어 전자계약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사업 진행의 적절성

1)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따르면 국가지정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하려는 사업은 반드시 그 보존처리계획서에 대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총 소요액(국비+지방비) 5천만원 이상의 보존처리 사업은 先 설계(보존처리계획)비, 後 시공비를 신청하여 단계별·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본 사업은 2권1책 총 122매 지류문화재에 대한 것으로서 보존처리 시공을 위한 과업설계를 위해 사전에 세부적인 과학적 기초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업내용이 다른 보존처리 계획수립과 보존처리 시공을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2)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인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공개)을 근거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비공개) 응찰한 각 업체들의 추첨을 통해 가장 많이 추첨이 된 4개의 복수예가를 뽑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본 사업과 관련된 보존처리 계획수립 용역과 보존처리 시공 용역 모두 △△△△△△△△△△△(대표 ○○○)가 진행하였다.

3. 종합판단

가. 보존처리가 필요한 동산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 및 원본 보호를 위한 영인본 제작 등을 진행하여 이후 세대들이 동산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용역의 진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최초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해당 계약의 낙찰 기준인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발생할 수 없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적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계약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이 사건 사업은 총 소요액(국비+지방비) 5천만원 이상의 보존처리 사업이 아니라, 계획수립과 보존처리 시공을 반드시 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 용역의 특성상 사전에 과학적 기초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상황이라 이를 구분하여 진행한 바 사업진행은 적절하게 진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 용역의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공개)을 근거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비공개) 응찰한 각 업체들의 추첨을 통해 가장 많이 추첨이 된 4개의 복수예가를 뽑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인 바, 사전용역 수행여부 등 보존처리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업체라는 사실이 타 업체에 비하여 입찰에서 유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총 소요액 5천만원 이하의 보존처리 사업이라면, 중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낭비를 막고 이 사건 사업에 투여되는 절차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기 바람.

기부자 명예의 전당 건축공사

1. 사업개요

<table>
<tr><td rowspan="2">사업개요</td><td rowspan="2">● 사업명 : 기부자 명예의 전당 건축 공사
● 사업기간 : 2021. 10월 ~ 2022. 3월
● 사업내용 : 기부자 예우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조성
● 위 치 : 연희동 170-181, 홍제천 폭포 마당 앞 벽면
● 사 업 비 : 53,283,090원
● 현 공 정 : 100%
(준공일자 : 2022.3.4.)</td><td>입찰 또는 계약 현황</td><td>● 발주금액 : 60,478,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53,283,090원
(낙찰율 : 87.749%)
● 계 약 일 : 2022-01-14
(착수일 : 2022-01-20)
● 발주방식 : 전자수의</td></tr>
<tr><td>계약 내용 변경 현황</td><td>● 설계변경 횟수 : 1
● 계약금액 증감 : 0원
● 준공정산 : 52,998,000원</td></tr>
</table>

기부(후원)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우리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여 주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시는 (1) 사업의 타당성, (2)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매년 증가하는 기부자에 대한 현행화 및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나눔문화의 사회적 확산 등 복지사업의 계속된 연결고리를 위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재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3년 설치된 명예의 전당이 노후화 및 주변경관과의 부조화로 2020년 철거된 만큼, 이번 사업에서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상징성, 작품성, 독창성있게 추진하고 영구적 설치기법으로 원활한 유지 관리 및 수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조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나.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최저가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결정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2) 조달청 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여 견적가격 53,283,092원(87.749%)로 입찰한 주식회사 ◎◎◎◎◎◎가 계약 대상자로 결정되어 전자계약절차를 진행하였다.

3. 종합판단

가.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문화의 사회적 확산 및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이 진행된 만큼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또한, 홍제천 폭포마당 앞 벽면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벽면을 설치하고 500만원 이상 기부자 총 265명의 명패(아날로그 벽)를 부착하고 디지털벽을 설치하여 디지털영상이 송출되도록 한 바, 계획한 사업에 맞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최초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해당 계약의 낙찰 기준인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발생할 수 없다.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는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자로, 주식회사 ◎◎◎◎◎◎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기재 결격사유도 없는 바, 계약업체도 적합하게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2013년에 설치한 명예의 전당이 7년 후 노후화 및 주변경관과의 부조화로 철거되고 이 사건 공사는 영구적 설치기법으로 원활한 유지 관리 및 수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진행한 만큼 이와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지능형 선별관제 및 지역특성 분석플랫폼 구축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능형 선별관제 및 지역특성 분석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 2021.8.23. ~ 2021.12.21. ● 사업내용 - 서버9대, 분석플랫폼1식, 선별관제라이선스400Copy, 운영단말1대 ● 위 치 : 스마트관제센터 ● 사 업 비 : 413,000,000원 ● 현 공 정 : 100% ※ 준공일 : 2021.12.21.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440,00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413,000,000원 (낙찰율 : %) ● 계 약 일 : 2021-08-23 (착수일 : -) ● 발주방식 : 수의계약 유찰(단독응찰,특례기간)에 따른 수의계약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없음 ● 계약금액 증감 : - 원 ● 준공정산 : - 원 ※ 준공정산된 경우에도 별도 기재

CCTV 증가에 따른 막대한 모니터링 예산과 관제인력의 확보 어려움으로 관제 품질이 저하되고 지능형 기술을 접목한 딥러닝 기반 영상분석 선별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기술적, 활용적 측면을 활용한 사건사고 해결 및 일원화된 프로세스의 AI 기반 선별관제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분석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본 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시는 (1) 사업의 타당성, (2)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3) 계약진행 과정의 적법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이 사건 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CCTV를 능동적으로 관제하고자 인공지능 관제환경으로 고도화하고 지능화된 CCTV관제로 실시간 사건·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서대문 스마트시티를 구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i) 신촌권, 이대권 등의 상권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선별관제 목표를 설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스마트 선별관제 알고리즘 및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ii)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분석플랫폼을 구축하며, iii) 실 운영 데이터 수집을 통한 지속학습 환류체계를 구현하는 것을 그 범위로 하였다. 또한, iv) 실시간 대응 환경, 기존의 서대문구 시스템과 연계, 운영을 최적화하는 등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사업범위로 하여 진행되었다.

나.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고, 본 사업은 사업비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참여를 제한하였고,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여 참자자로부터 입찰서 및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이후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적격여부를 통보한 후 계약을 진행하였다.

2)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진행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3) ○○○○○○(주)가 △△△△와 공동수급 형태로 참가하여(주사업자 ○○○○○○(주) : 60%, △△△△ : 40%) 8명의 평가위원들로부터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1.6666점, 가격평가 10점 종합평점 91.6666 계약 체결 적격대상자가 되어 계약을 진행하였다.

다. 계약진행 과정의 적법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는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입찰참가자가 1개 업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고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다.

위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을 진행할 당시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3호) 에 의해 한시적 특례기간이 아래와 같이 재공고입찰 없이 단독 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

3. 종합판단

가. 이 사건 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CCTV를 능동적으로 관제하고자 인공지능 관제환경으로 고도화하고 지능화된 CCTV관제로 실시간 사건·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서대문 스마트시티를 구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나. 이 사건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사업기간 산정

및 과업내용을 확정한 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사 평가위원들이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 및 가격평가를 각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한 바, 이 사건 용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 기준 및 과정, 그리고 계약업체 선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은 해당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 8명[외부전문가(대학교수 등) 4명, 타기관공무원 4명]으로 구성하는데 구성하기전 3배수이상의 예비평가위원 명단을 작성하고 투찰하는 업체의 추첨(다빈도순)으로 선정되고, 선정하는 방법도 해당 기관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후보군을 선정하고, 선정된 후 별도의 안내공문을 통해 제안평가회의 참석을 안내하는 바 적합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사업자체만 보았을 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공고를 통한 입찰과정을 생략할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 있지만, 행정안전부 고시의 목적이 해당 사업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업체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는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항은 위와 같은 재난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제26조 제2항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고, 위 행정안전부 고시 담당부서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확인한 결과 제26조 제2항이 상정하고 있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바, 과정이 위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없음

고은산 진입로 개설공사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은산 진입로 개설공사 ● 사업기간 : 2021. 6. 15. ~ 9. 10. ● 사업내용 - 데크계단 및 난간설치 등 ● 위 치 : 신기한놀이터 뒤 등 3개소 ● 사 업 비 : 106,000천원(구비) ● 준공일자 : 준공완료(2021. 9. 13.)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191,170,800원 ※ 도급(127,058,000), 관급(64,112,800) ● 계약금액 : 112,788,000원 (낙찰율 : 87.757%) ● 계 약 일 : 2021-06-11 (착수일 : 2021-06-15) ● 발주방식 : 전자수의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6,788,000 ● 준공정산 : 106,000천원 ※ 준공정산된 경우에도 별도 기재

고은산 진입로 개설공사는 이용인원 대비 진입로가 부족한 실정으로 신규 등산로를 개설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조달청 G2B를 통한 전자 계약)

2) 입찰자격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지역)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 또는 산림토목(2016.7.29. 이전 등록업체만 해당)]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공사의 타당성

- 홍재현대아파트(장미터널): 목재데크 57m, 야자매트 93.5m
- 신기한 놀이터(2호): 목재데크 30m

다. 설계 변경

- 홍제 현대 아파트: 데크(W1800) 57m 삭제, 야자매트 93.5m 삭제, 산철쭉 270주 증가
- 신기한 놀이터 2호 뒤: 데크(W 1500) 길이 변경(29.2m→35.6m), 황매화 430주 증가
- 홍제 아이파크 아파트 뒤: 데크(W 1500) 길이 변경(0m→38.7m)
- 야호 놀이터: 데크(W 1500) 길이 변경(0m→31.5m)

3. 종합판단

가. 계약방법 및 입찰자격은 적정하고, 이에 의하여 ☆☆☆☆(주)가 낙찰되었으며,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입찰자격에 있어서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지역)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 또는 산림토목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입로 개설 공사의 타당성 및 시공의 적정성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라. 설계 변경은 현장 여건 및 주민 민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공사비 총액의 변동이 없다고 할지라도 당초설계에 있는 홍제 현대 아파트의 데크(W1800)와 야자매트는 민원으로 완전 삭제하고, 홍제 아이파크 아파트 뒤와 야호 놀이터에 데크(W 1500)로 변경하여 신설한 것은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조치사항 : 권고

공사비 총액의 변동이 없다고 할지라도 당초설계와 다른 설계변경을 지양하기 바람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 사업기간 : 2021. 6. 23. ~ 9. 13. ● 사업내용 -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및 바닥포장 교체 - 지압길 조성 및 세족시설 설치 ● 위 치 : 백련,해담는,나비울어린이공원 ● 사 업 비 : 191,000,000원 ※ 설계변경 금액 ● 현 공 정 : 준공(2021-09-13)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290,917,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191,000,000원 (낙찰율 : 87.754%) ● 계 약 일 : 2021-06-23 (착수일 : 2021-06-25) ● 발주방식 : 전자수의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증8,077,670원 ● 준공정산 : 190,994,400원

백련, 해담은, 나비울 등 3개 어린이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 및 바닥 포장 교체, 지압길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다.

2. 청렴계약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내용

1) 계약방법 : 전자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3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관에 관한 고시

2) 공사구분 : 조경공사업 종합공사(전문공사 허용)

3) 입찰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시공자격 업종별 비율 및 금액

종합공사업	조경공사업(100%)	206,131,000원
전문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91%)	187,573,000원
	조경식재공사업(9%)	18,558,000원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 최저가(87.745%)

5) 선금 지급

계약금액(금 182,922,330원)의 57.4%에 해당하는 금액 105,00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

나. 특기시방서

태양광 공원이용안내판, 볼라드, 체력단련시설, 네트놀이대, 놀이시설물, 흔들놀이대, 원형벤치, 세족대

다. 설계변경

1) 백련어린이 공원

- 기존 펜스B 존치와 포장 및 시설물 추가 철거로 인한 물량 변경
-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수목 수량 증가(2,617,220원)
-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시설 품목 변경에 따른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 구매(5,310,610원)
-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빗물받이 1조 추가 설치 및 연결관 수량 증가

2) 해담는어린이 공원

-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화강석 경계석 규격 변경 등

3) 나비울어린이 공원

- 지압로 설치에 따른 재포장 물량 증가 등

3. 종합판단

가. 이 건 서대문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가 안심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어린이놀이 시설」을 교체하는 공사는 타당하다.

나. 이 건 공사 계약 입찰자격을 조경공사업 등으로 제한하여 전자 수의계약으로 입찰하여 견적가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4억 원 이하인 공사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2억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위 공사의 경우 '조경공사업' 허용 종합공사로서 [일반(종합)건설공사 4억 원 이하인 공사로 한시적 특례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수의계약 적용 대상이다.

다. 이 건 위 공사계약과 관련한 선금 지급과 정산은 적정하다.

라. 이 건 공사 중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철봉과 입식헬스싸이클을 추가(금액 5,310,610원)하였는 바 이는 사전 시설이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놀이공원 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사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북한산근린공원 9지구 조성공사

1. 사업개요

<table>
<tr><td rowspan="2">사
업
개
요</td><td rowspan="2">● 사 업 명 : 북한산근린공원 9지구 조성공사
● 사업기간 : 2021. 12. 27. ~ 2022. 11. 30.
●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 위 치 : 홍은동 산1-587
● 사 업 비 : 283,419천원
- 도급비 275,930천원
- 관급비 7,498천원
● 준공일 : 2022. 11. 30.</td><td>입찰
또는
계약
현황</td><td>● 발주금액 : 317,855,000원
※도급(283,146,000), 관급(34,709,000))
● 계약금액 : 248,722,490원
(낙찰율 : 87.84%)
● 계 약 일 : 2021-12-27
(착수일 : 2021-12-29)
● 발주방식 : 전자수의</td></tr>
<tr><td>계약
내용
변경
현황</td><td>●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27,220,000원
● 준공정산 : 275,930,000원</td></tr>
</table>

북한산근린공원 9지구 조성공사는 북한산근린공원 내 토지보상이 완료된 부지에 대해 북한산자락길 입구 및 주민과 소통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의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전자공개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2) 입찰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사업과 관련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공사의 타당성

- 기존 공원 지형을 활용한 북한산자락길 진입부 환경개선
-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우범화 장소가 되지 않도록 열린 공간으로 조성
- 기존 수목 정비 및 노후화된 시설/포장 교체

다. 설계 변경

- 사업부지내 폐기물 추가 발생
- 현장 여건 변경(암반구간 터파기 등) 및 북한산자락길 진입로 전체를 정비해달라는 민원발생 반영에 따라 설계변경

3. 종합판단

가. 계약방법 및 입찰자격은 적정하고, ◎◎◎◎◎◎(주)에 낙찰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공사 내역 및 시공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서대문 이음길 활성화를 위하여 북한산 자락길 주 진입로인 홍록배드민턴장 구간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장대석 쌓기 구간을 연장하여 도보편의성 증진 및 공원 환경을 개선하고자 준공기한연기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설계변경에 있어서 소나무의 규격 변경, 산철쭉이 0에서 655주, 꽃댕강과 화살나무가 0에서 700주, 낙상홍이 181에서 1500주로 변경되는 등 식재 변경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설계변경에 의하여 식재공의 종류와 수량의 변경이 심하니 이를 지양하기 바람

2022 옴부즈만 운영보고서

2023년 3월 발행

발 행 처 서대문구 옴부즈만
주　　소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168-6)
전화번호 02)3140-8303
홈페이지 http://www.sdm.go.kr
청렴신문고 http://clean.sdm.go.kr